

비영리분야 통계의 실태와 통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2013. 6

손 원 익

서 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의 경제주체는 정부와 시장이 있으며, 이외에도 비영리단체(NPO; Non Profit Organization)가 실질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경제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공공재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정부 혼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NPO가 수행하고 있다. NPO는 정부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잘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NPO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대부분 민간의 기부금에 의존하였으나, 최근에는 NPO가 정부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행하면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NPO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효율성 검증 및 제고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NPO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운영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NPO에 대한 관리는 수행하는 사업의 회계관리, NPO 운영에 대한 회계관리, NPO 운영의 공익성 검증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때 그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정부는 NPO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관련부서에 보고해야하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NPO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양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며, 보고되고 있는 정보도 각 부처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제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여 통계로서의 유용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NPO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사업에 대한 효율성 담보에 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NPO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개 및 통계 축적이 선행되어야 민간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도 추가로 유인할 수 있음은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입증된바 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어 NPO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할 때 NPO에 대한 관련 정보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와 통계 구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원의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하였다. 저자는 본 보고서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에 참여하여 유용한 조언을 해주신 연세대학교의 박태규 교수, 호서대학교의 양용희 교수, 통계개발원의 이희길 사무관과 최종보고서의 평가단계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 논평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수집 및 교정에 도움을 준 남희 연구원, 이현영 주임연구행정원, 연구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6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옥 동 석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복지·교육·문화예술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 및 관련 통계의 축적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비영리법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관련 통계는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를 맡고 있는 각 부처의 경우 부처별 비영리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통계 구축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세청도 비영리법인의 수 및 지역별 분포 등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축적하고 있지 않다. 최근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익법인의 실태가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지만,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부와 관련된 통계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합계만 발표가 되고 있고 실태분석에 필요한 분야별 기부에 대한 내용 등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통계 및 기부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분석에서 나아가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관련 통계 및 기

부 관련 통계를 실태 위주로 분석하고,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 비영리 통계의 현황과 관련 근거법 및 규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비영리 통계의 현황은 비영리법인 관련 통계와 기부 관련 통계로 구분하고, 발행 주체에 따라 정부통계와 민간통계로 구분하였다. 『국세통계연보』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공시시스템 자료의 통계로서의 유용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III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비영리 통계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통계와 비교·분석하였다. 가장 모범이 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와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 체계가 유사한 일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IV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통계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비영리단체의 재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축적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명성은 비영리단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부 관련 통계는 현재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기부금 현황 및 기부주체별 기부금 규모 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여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기부금 현황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

영리단체의 분야를 공식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는 명세서에 각 비영리단체의 분야별 코드를 기입하게 하면 기부금에 대한 거시적인 현황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영리 통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책임지는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비영리단체의 설립은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형식적으로 국세청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개선방향은 영국의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와 같은 조직에서 비영리단체의 설립, 공익성 검증, 사후관리를 일관성 있게 책임지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5
II. 국내 비영리 통계 현황	18
1. 국내 비영리분야 관련 법률과 정보 공개 현황	18
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1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4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30
라. 세법	31
마.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	38
2. 정부 각 부처 발행 통계	40
가. 비영리분야	40
나. 기부 관련 분야 통계 현황	70
3. 민간 차원에서의 자료	84
가.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84
나. 아름다운재단	87
III. 비영리분야 통계 구축의 해외 사례	93
1. 일본	93
가. 국세통계연보	93
나. NPO 백서(일본 국세청)	106
다. NPO 백서(오사카 대학)	111

라. Giving Japan	120
2. 미국	123
가. NCCS	123
나. Giving USA	141
3. 국제 비교	145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49
참고문헌	152
<부록 1> CAF The World Giving Index 2010	155
<부록 2> 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 – Core Codes (NTEE–CC) Classification System (rev. May 2005) ...	157
<부록 3> 서식(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기부금 조정명세서· 기부금 명세서·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165

표차례

〈표 II-1〉 비영리법인 관련 법률 및 규칙	18
〈표 II-2〉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및 지정기부금 회계처리	21
〈표 II-3〉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6
〈표 II-4〉 비영리법인의 정보공개 현황	36
〈표 II-5〉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	38
〈표 II-6〉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법인 수	42
〈표 II-7〉 법인세 신고 현황	43
〈표 II-8〉 지역별·업태별 가동비영리법인 수	44
〈표 II-9〉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의 공익법인 현황(2012년)	48
〈표 II-10〉 201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의 공익법인 현황	49
〈표 II-11〉 유형별 기부금 수익 발생 법인 현황	49
〈표 II-12〉 유형별 기부금 수익규모 비교 현황	51
〈표 II-13〉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공시자료	53
〈표 II-14〉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상 공시자료 비교	59
〈표 II-15〉 주요 모금기관의 연도별 모금액(2000~2011년)	61
〈표 II-16〉 공익법인 공시시스템과 연차보고서 기부수입액 비교	63
〈표 II-17〉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2012년)	67
〈표 II-18〉 법인과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72
〈표 II-19〉 근로소득자의 개인기부 현황	72
〈표 II-20〉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73
〈표 II-21〉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74
〈표 II-22〉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75
〈표 II-23〉 업태별 기부금 신고 현황(2011년)	76

〈표 II-24〉 과세표준 규모별·후자법인 10분위별 기부금 신고 현황 (2011년)	77
〈표 II-25〉 항목분류 설명	79
〈표 II-26〉 우리나라의 기부금 규모	81
〈표 II-27〉 2011년 나눔문화 관련 사회조사 항목	82
〈표 II-28〉 기부경험과 형태(2011년)	82
〈표 II-29〉 기부경로별 현금기부자 비중	83
〈표 II-30〉 1인당 평균 현금기부금액(2011년)	83
〈표 II-31〉 기업 사회공헌비용 총지출액 및 평균지출액 규모 추이 ..	85
〈표 II-32〉 2010년 경상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출비용 현황	86
〈표 II-33〉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추이	86
〈표 II-34〉 Giving Korea 조사설계	87
〈표 II-35〉 Giving Korea 2010 조사내용	89
〈표 III-1〉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97
〈표 III-2〉 일본 국세통계연보 법인세 과세 현황	99
〈표 III-3〉 기부금 특별공제(세액공제)	100
〈표 III-4〉 일본의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	102
〈표 III-5〉 신고소득세(Self-assessment Income Tax) 중 기부금공제 현황(2010년)	103
〈표 III-6〉 법인의 자본금계급별 기부지출액(2010년)	104
〈표 III-7〉 법인의 사업별 기부지출액(2010년)	105
〈표 III-8〉 각 부처에서 국가 소관 공익 법인에 대한 보조금·위탁비 등의 상황	110
〈표 III-9〉 일본 비영리법인 형태별 단체 수	114
〈표 III-10〉 일본 비영리법인 형태별 단체 수(2006년)	114
〈표 III-11〉 일본 비영리법인별 지출(2004년)	116
〈표 III-12〉 일본 비영리법인별 고용자 보수(2004년)	116

〈표 III-13〉 일본의 기부 규모	120
〈표 III-14〉 명목GDP 대비 기부액 비율	120
〈표 III-15〉 일본의 분야별 기부 규모	122
〈표 III-16〉 미국 비영리단체의 규모와 재정	125
〈표 III-17〉 2010년 기준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 분야별 수과 재정	128
〈표 III-18〉 미국 비영리조직의 규모 비교(1999, 2009년)	130
〈표 III-19〉 미국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의 규모(2010년) ..	132
〈표 III-20〉 미국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의 규모(2010년) ..	134
〈표 III-21〉 미국의 501(c)(3) 면세조직 이외 비영리조직의 규모(2010년) ·	135
〈표 III-22〉 NTEE Code	140
〈표 III-23〉 수령단체의 유형에 의한 기부 분포(2011년)	141
〈표 III-24〉 기부 통계 국제 비교	147
〈표 III-25〉 비영리 통계 국제 비교	148
〈부표 1〉 기부에 관한 국제 비교	156

그림차례

[그림 II-1] 한국의 비영리법인 분류	19
[그림 II-2] 순수 기부참여율 변화 추이	90
[그림 II-3] 순수 기부 평균금액 변화 추이	90
[그림 II-4] 기부처별 기부액 변화 추이	91
[그림 II-5] 기부참여자의 기부처 순위	92
[그림 III-1] 일본 국세청통계연보 법인세분야 수록 대상	95
[그림 III-2] 일본의 비영리법인	112
[그림 III-3] 일본 비영리법인의 경제규모	115
[그림 III-4] 일본 비영리법인의 경제규모	115
[그림 III-5] 일본 NPO법인 단체 수 추이	117
[그림 III-6] 전년 대비 NPO법인 연간 인증 비율	118
[그림 III-7] 일본 NPO법인의 활동분야(정관 기재 기준)	119
[그림 III-8] 미국의 공공자선단체 규모와 지출(2010년)	126
[그림 III-9] 공공자선단체의 자원 분포(2010년)	127
[그림 III-10] 미국의 비영리법인 분류	129
[그림 III-11] 미국의 기부금 규모(1971~2011년)	142
[그림 III-12] 1971~2011년 GDP 대비 기부금의 비중	143
[그림 III-13] 1971~2011년 미국의 전체 기부액 추이	143
[그림 III-14] 미국의 기부주체별 기부액 분포(2011년)	144
[그림 III-15] 미국의 기부처별 기부액 분포(2011년)	144

I. 서론

복지·교육·문화예술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전달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영리단체를 통해 전달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국민계정체계에서의 비영리단체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로서 이를 설립·지배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단위에 대해 소득, 이윤, 기타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정의한다. UN에서 발행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핸드북』(2003)에 의하면 비영리단체(NPI)의 구조·운영적(structural-operational) 정의에 포함되는 다섯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직화(organization)
- ② 비영리 및 이윤 미배분(not-for-profit/non-profit-distribution)
- ③ 정부와 조직적으로 독립(institutionally separate from government)
- ④ 자치적 운영(self-governing)
- ⑤ 자발적 참여(non-compulsory)¹⁾

현재의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비영리단체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김혜련·임경민,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방법 연구』, 2012. 11

이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한국은행에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에 관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인력 부족 및 비용 문제로 2007년 내부적으로 개발계획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학계 등 전문가들의 계정 관련 연구는 기초통계 및 정보의 부족 등으로 중단된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1991년부터 미국 Johns Hopkins 대학 시민사회연구센터(CCSS; The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²⁾) 주관으로 비영리단체계정에 대한 연구 및 작성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26개 국가가 UN 핸드북에 따라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호주·뉴질랜드·캐나다·노르웨이·일본 등 15개국에서 위성계정을 작성 중에 있다.³⁾

최근 비영리법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관련 통계는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비영리법인 관련 통계는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를 맡고 있는 각 부처의 경우 부처별 비영리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통계 구축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경우도 비영리법인의 수 및 지역별 분포 등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축적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익법인의 실태가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계자료로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부와 관련된 통계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합계만 발표가 되고 있고 실태분석에 매우 중요한 분야별 기부에 대한 내용은 세무신고서식에 포함되지 않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한

2) <http://ccss.jhu.edu/>

3) 김혜련·임경민,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방법 연구』, 2012, 11

선행연구로는 통계청에서 발행한 『나눔통계 개선방안』⁴⁾이 있다. 이 보고서는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하여 나눔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나눔통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계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나눔통계 개선방안』의 개념 및 이론적 검토에서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영리법인 관련 통계 및 기부 관련 통계를 실태 위주로 분석하고,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 통계가 제공되고 있는 우리의 실태를 분석한다. 주요국과의 비교를 위해 비영리분야 통계가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와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현황을 분석한다. 주요국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3개국의 통계를 비교하고 이로부터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비영리 통계의 현황과 관련 근거법 및 규정에 대하여 분석한다. 비영리 통계의 현황은 비영리법인 관련 통계와 기부 관련 통계로 구분하고, 발행 주체에 따라 정부통계와 민간통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비영리 통계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통계와 비교·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4) 박주언·이희길, 『나눔통계 개선방안』, 201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통계청

II. 국내 비영리 통계 현황

1. 국내 비영리분야 관련 법률과 정보 공개 현황

본 절에서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관련된 법률을 설립과 관련된 근거법에서부터 세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각 법률에서 요구하는 비영리단체 관련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와 같이 각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축적되고 공개됨으로써 비영리분야의 통계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I-1〉 비영리법인 관련 법률 및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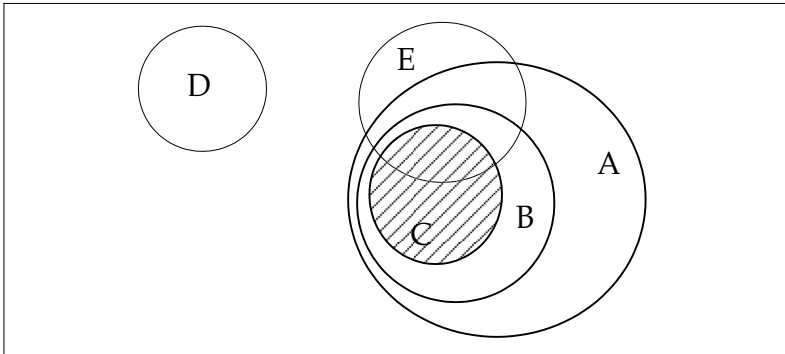
법률명	대상
민법	-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및 그 소속청,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법원행정처, 법제처,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통일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헌법재판소 사무처, 환경부 및 기상청
상속 및 증여세법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

〈표 II-1〉 비영리법인 관련 법률 및 규칙(계속)

법률명	대상
특별법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한국의 비영리법인을 분류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는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대상 법인 및 단체, B는 상속세 면세 공익법인, C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D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E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해당된다.

[그림 II-1] 한국의 비영리법인 분류



- 주: A: 법인세법상 기부금 공제 대상 법인(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B: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C: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D: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E: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된 비영리단체
 A, B, C, D: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이 인정되는 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은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적용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규정에 의해 정해진 단체⁵⁾만 이에 해당한다.⁶⁾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는 법령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내국법인이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 ①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5) 규정에 의해 정해진 단체란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금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

6)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표 II-2〉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및 지정기부금 회계처리

구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회계처리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설정 가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의 사용액으로 처리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2)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자료: 손원익·김태훈, 『연구중심병원 세제혜택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
조세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 용역보고서), 2012

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⁷⁾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민법」을 근간으로 하여 허가하고 있다. 「민법」은 법률이 아니면 법인이 성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및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취소 권한도 갖고 있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⁸⁾

7) 손원익,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국제 비교」, 『재정포럼』 2011년 5월에서 발췌 및 인용

8) 민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각 주무관청은 「민법」의 하위 규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비영리법인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설립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감사원 규칙의 예를 들면, 「민법」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설립취지서·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설립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⁹⁾ 감사원 규칙에 의하면 신청내용이 ①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고, ②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으며, ③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경우¹⁰⁾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무부처의 규칙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에 대한 조항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¹¹⁾되기 때문에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에 비해 정관의 기재 내용 및 허가 취소 규정과 이사 및 감사에 대한 규정 등이 엄격하게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9) 감사원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10) 감사원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1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법인에 대해 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주무관청이 「민법」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사실을 조사하고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하도록 규정¹²⁾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주무관청에 대한 예·결산 자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¹³⁾ 예산자료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도록 하여 각 법인은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결산의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¹⁴⁾

12)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4

13)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2

14)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19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성실공익법인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은 각 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정보공개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각 부처별로 요구하는 정보 공개 사항은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자산 증감사유·재산목록·사원의 이동 현황 등을 소관부서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 증감사유·사원의 이동 현황은 감사원 소관부서에 국한하여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을 보면, 이 두 기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2005년 6월 4일 제·개정문에서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의무사항을 폐지함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예술법인·예술단체지정제도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 및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 ① 정관 또는 약정
- ② 고유번호증 사본
- ③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공연장 등록증 사본
- ④ 최근 2년간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 ⑤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 ⑥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표 II-3〉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자산 증감 사유	재산 목록	사원의 이동현황	기간	
						제출 대상	
감사원	○	○	○	○	○ (사단법인의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매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	
고용노동부	○	○	×	○	×	감사원 사업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	○	×	○	×	고용노동부장관 사업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	
교육과학기술부	○	○	×	○	×	주무관청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국기보훈처	○	○	×	○	×	회계연도 종료 후 늦어도 2개월 이내	
국방부 및 그 소속청	○	○	×	○	×	국기보훈처장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표 II-3〉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계속)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자산 증감 사유	재산 목록	사원의 이동현황	기간	
						제출 대상	제출 대상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	○	×	○	×	매 사업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매 회계연도의 끝난 후 2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	○	×	○	×	매 사업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
						매 사업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	○	○	×	○	×	매 사업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
						매 사업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삭제 (2005.6.4)	삭제 (2005.6.4)	×	삭제 (2005.6.4)	×	삭제 (2005.6.4)	주무관청에 제출
						삭제 (2005.6.4)	주무관청에 제출
법무부 장관	○	○	×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법무부 장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	○	○	×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법원행정처장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법원행정처장

〈표 II-3〉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계속)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자산 증감 사유	재산 목록	사원의 이동현황	기간
법제처	○	○	×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법제처장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	○	×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여성가족부	○	○	×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여성가족부 장관
외교통상부	○	○	×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외교통상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	매사업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책연구소가 연간활동실적보고와 회계보고를 한 경우는 제외 위원장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	○	×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통일부	○	○	×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통일부 장관

〈표 II-3〉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계속)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자산 증감 사유	재산 목록	사원의 이동현황	기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제출 대상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	○	×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	○	×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무처장	
환경부 및 기상청	○	○	×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3년 03월 18일 기준
 손원의·김상현, 『공익단체의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 관한 경제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1

이와 같은 정보공개 사항은 비영리법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체계적으로 축적되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률 및 시행령」은 등록요건과 교부금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교부금 지원제도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업 외의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 특정자료¹⁵⁾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등록된 비영리단체에만 해당된다.

등록 요건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필요한 요건에는 ①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상시 구성원 수¹⁶⁾가 100인 이상일 것, ⑤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¹⁷⁾이 있으며,

15) - 사업계획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업보고서: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16) 상시 구성원 수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정회원을 일컫음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본 시행령에 의하면 비영리단체가 등록할 때 등록신청서 등을 장관 또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¹⁸⁾

라. 세법

비영리법인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세법의 규정은 주로 「상속·증여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대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에도 일부 관련 규정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및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¹⁹⁾은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1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18) - 등록신청서

- 1. 회칙
- 2.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 3.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 4. 회원명부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

받아야한다.²⁰⁾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 이외에도 공익법인 등(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공익법인, 종교 및 교육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제외)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²¹⁾

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²²⁾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에 관한 서류는 공익법인 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에 한한다. 그밖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 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제외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①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③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²³⁾

또한 세무확인 의무에 따라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²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⁵⁾

단, 이는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법인에 국한하고 있어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국가·지자체가 출연하여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는 본 보고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²⁶⁾

2012년 법률의 개정으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1①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①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②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43②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제외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감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본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의 제도는 종교법인과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한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공시대상에 추가하였다. 즉,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시의무를 면제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관련 자료를 공시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종교법인을 제외한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현황과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²⁷⁾

「소득세법」 제160조의 3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로 변경되어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기부금 수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²⁸⁾ 동법 시행령

27) 소득세법 제160조의 3(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법인세법 제112조의 2(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 관련 서식은 부록 참조

제208조의 3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과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은 1)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기부금액, 3)기부금 기부일자, 4)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5)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²⁹⁾ 즉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표 II-4〉는 이상에서 논의한 관련 법규별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보 공개 현황을 종합하여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자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8)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0조 29의8

-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 서식(1)을 따름, 부록 참조

2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0조 29의9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 서식(2)에 따름, 부록 참조

〈표 11-4〉 비영리법인의 정보공개 현황

법률명	항목명	대상	보고 및 공시방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주무관청 에 결산 자료 보고 의무	공익법인	주무 관청에 보고
	등록요건	등록할 때 필요한 내용	장관 또는 시도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률시행령	교부금 지원 제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업 외의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
	소관부서 보고 의무	소관 부서가 이에 해당할 경우	소관부서에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공익법인 등 ※ 100억 미만 공익법인, 종교 및 교육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제외 ※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세무서장에 제출
	보고서 등 제출 의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세무 확인 의무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포함	관할세무서장에 보고

〈표 II-4〉 비영리법인의 정보공개 현황(계속)

법률명	항목명	대상	보고 및 공시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무 확인 의무	※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국가·지자체가 출연하여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제외	- 관할세무서장은 세무확인 결과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결산서류 공시 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 ※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종교법인의 경우 제외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포함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부가가치세법	재산서합계표 등 자료 제출 의무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 - 재산서합계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 강제규정 없음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	요청할 경우 제출

자료: 손원익·김상헌, 『공익단체의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 관한 경제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1, 재구성

마.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

현행법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법인 설립에 관한 「사립학교법」과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의료법」이 있다.³⁰⁾

〈표 Ⅱ-5〉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

법률명	대상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이란 특정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등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의료법	-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의료법인, ④비영리법인, ⑤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 중 하나임

3개 특별법에서의 보고 관련 규정을 보면, 「의료법」은 해당 법률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로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¹⁾

30) 오영호·손원익·황준성·전광현·양재모·윤강재,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1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재산 출연 시 재산이전 사항과³²⁾ 예·결산 사항³³⁾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해³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며, 예·결산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도 규정하고 있다.³⁵⁾ 이밖에 관할청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법인에 대해 해당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규정할 수 있고,³⁶⁾ 감독상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 및 장부나 서류 등에 대한 검사 등을 명할 수 있다.³⁷⁾ 또한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³⁸⁾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이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³⁹⁾와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산 취득 시에는 사유,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⁴⁰⁾ 이밖에 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후원금 조성·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⁴¹⁾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⁴²⁾

시·도지사는 보고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고,⁴³⁾ 보건복지부 장관

31) 의료법 §61
 32) 사립학교법 §8의2
 33) 사립학교법 §31①
 34) 사립학교법 §54
 35) 사립학교법 §31①
 36) 사립학교법 §43②
 37) 사립학교법 §48
 38) 사립학교법 §45
 39) 사회복지사업법 §18⑥
 40) 사회복지사업법 §24
 41) 사회복지사업법 §36
 42) 사회복지사업법 §45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⁴⁴⁾ 「사회복지사업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개선·사업 정지·시설의 장 교체·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⁴⁵⁾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⁴⁶⁾ 관리·감독 조항을 두고 있다.

2. 정부 각 부처 발행 통계

본 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에서 발행하고 있는 통계를 소개한다. 관련 통계는 크게 비영리분야와 관련된 통계와 기부와 관련된 통계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비영리분야와 관련된 통계는 『국세통계연보』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기부와 관련된 통계는 『국세통계연보』와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를 분석한다.

가. 비영리분야

국내 비영리분야에 대한 통계 역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43) 사회복지사업법 §22①

44) 사회복지사업법 §51

45) 사회복지사업법 §40①

46) 사회복지사업법 §54

그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통계의 범위가 확대되어 온 『국세통계연보』이며, 또 다른 하나는 최근 관련 규정이 도입되어 관련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이다.

1) 국세통계연보

『국세통계연보』는 각 세무서에서 수집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전수 자료를 국세청에서 집계하여 수록한 것으로 비영리법인의 현황을 수록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세수와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그 규모를 정확히 집계한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세무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사업목적에 따른 공익법인 가동법인 수를 연도별·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연도 말 기준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이다.

〈표 II-6〉은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공익법인을 종교,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 및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법인의 수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사업목적에 따른 공익법인 가동법인 수를 연도별·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법인의 수는 29,170개로 이 중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17,75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학술·장학, 사회복지, 기타의 순서로 공익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표 II-6〉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법인 수

(단위: 개)

	합계	종교보급	사회복지	교육사업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목적	기타
2006	27,500	17,135	2,617	1,858	2,837	493	478	2,082
2007	27,793	17,591	2,692	1,751	2,937	561	495	1,766
2008	27,811	17,586	2,693	1,745	2,960	572	503	1,752
2009	28,905	17,958	2,830	1,749	3,163	673	610	1,922
2010	29,132	17,863	2,895	1,735	3,134	773	671	2,061
2011	29,170	17,753	3,028	1,681	3,229	658	700	2,121

자료: 2012년 『국세통계연보』

사업목적별 공익법인에서 등록된 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공익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국세통계연보』는 법인세 부문에서 법인세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①법인세 신고 현황, ②가동법인 수, ③신고법인 수 등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을 의미하며,⁴⁷⁾ 관련 통계는 〈표 II-7〉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표 II-8〉에서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현황을 지역별 및 업종별로도 집계하여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총신고 비영리법인의 수는 20,673개로 전체 법인 수 460,614개의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부담세액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부담하는 규모가 약 2조 4,275억원으로 전체 부담

47) 손원익·박태규, 『민간비영리조직(NPO)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2

규모 37조 9,619억원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어 비영리법인 수의 비중보다 부담세액의 비중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II-7〉 법인세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총신고법인 수		총부담세액			
			법인 수		금액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합 계	440,023	460,614	236,742	247,719	29,581,446	37,961,904
영리법인	420,225	439,941	228,755	239,256	27,461,136	35,534,403
비영리법인	19,798	20,673	7,987	8,463	2,120,310	2,427,501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가동 중인 비영리법인 중 서울청 소관의 비영리법인이 전체의 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지역이 1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9,954개의 가동비영리법인 중 서비스업이 제일 많고,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이 그 뒤를 차지한다.

〈표 II-8〉 지역별·업태별 가동비영리법인 수

(단위: 개)

지역별			업태별			
연 도	2010	2011	연 도	2010	2011	
합 계	18,466	19,954	합 계	18,466	19,954	
서울청	5,829	6,372	농업·임·어업	444	469	
충부청	인천	652	726	광업	5	5
	경기	2,690	3,020	제조업	818	919
	강원	632	668	전기·가스 ·수도업	24	26
대전청	대전	495	518	건설업	620	675
	충북	629	673	도매업	931	1,020
	충남	781	804	소매업	587	671
광주청	광주	447	508	음식·숙박업	133	189
	전북	754	802	운수·창고· 통신업	369	404
	전남	760	800	금융·보험업	4,246	4,160
대구청	대구	822	844	부동산업	3,496	3,840
	경북	1,073	1,136	서비스업	5,360	6,123
부산청	부산	1,203	1,284	보건업	1,076	1,174
	울산	290	306	기타업종	357	279
	경남	1,040	1,108			
	제주	369	385			

- 주: 1. 해당연도 말 가동법인 기준으로 지점법인을 제외한 법인 수입
 2. 업태분류는 법인의 신청, 정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세적)상의 주업
 종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공익법인이 스스로 공시등록(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을 하고, 일반인이 그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규정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공시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대상을 확대하였다.⁴⁸⁾

기존의 제도는 종교법인과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한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2011년 7월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공시대상에 추가하였다. 그 결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관련 자료를 공시하도록 개정되었다.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공시의무⁴⁹⁾에 따라 다음의 서류⁵⁰⁾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해야 하며, 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⁵¹⁾

- ①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①, §43의3①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의3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칙 별지 제31호

51) 손원익,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 『재정포럼』, 2012. 4

- ②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⁵²⁾
-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⁵³⁾
- ④ 주식보유 현황 등 주식 관련 서류
 -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⁵⁴⁾
 -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 등의 발행법인의 관계
 -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 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⑤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⁵⁵⁾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⁵⁶⁾
 - 종교법인, 학교법인 이외의 공익법인⁵⁷⁾

따라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종교 법인을 제외한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현황과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결산서류 공시시스템(npoinfo.nts.go.kr)을 홈텍스(npoinfo.hometax.go.kr)로 통합하였으며, 해당 사이트를 ‘나눔넷(www.nanumnet.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칙 별지 제31호 부표1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칙 별지 제31호 부표3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칙 별지 제31호 부표2

55) 정형서식 없음

56)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 ③

57)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

or.kr)⁵⁸⁾이나 ‘더하고 나누고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⁵⁹⁾’ 등의 나눔포털과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존의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은 단순 열람만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식의 표준화 및 출력·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가) 2012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현황⁶⁰⁾

공시열람시스템에 나타난 공시 현황은 매일 갱신되는 자료로 1개 법인이 중복하여 게시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결산하는 달에 따라 공시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에 나타난 수치의 해석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살펴보면, 2012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등록된 공익법인은 총 5,755개에 불과하다.

-
- 58) 나눔넷은 전국 약 5만여 나눔 관련 기관 및 시설, 단체(나눔터)별 기관 현황, 후원금 내역, 나눔 프로그램, 캠페인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 연계함으로써 나눔인이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 활동에 손쉽게 참여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서비스하는 포털서비스임
 - 59) 더하고 나누고 나눔포털은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 통합정보 및 참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나눔활동정보 통합제공, 정보 공유, 참여, 실적확인 및 나눔 관련자료 등 나눔 관련 One Stop 서비스와 더불어 개인별 나눔활동 관리기능, 맞춤나눔 정보 추천 등 사용자 편의 및 나눔참여 지원을 위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눔문화 활성화 및 나눔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포털사이트임
 - 60) 박태규·손원익·김진, 『모금기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재정학회, 2011을 발췌 요약함

〈표 II-9〉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의 공익법인 현황(2012년)

(단위: 개)

	전체	교육	학술·장학	사회 복지	의료	문화	기타
유형별 검색결과	5,755	1,537	1,384	1,233	728	263	610

주: 2012년 8월 16일 기준

자료: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열람 시스템

나) 국세통계연보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의 비교⁶¹⁾

기부금 수입규모에 대해 『국세통계연보』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을 비교함으로써 공시시스템의 정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10〉은 『국세통계연보』와의 비교를 위해 2010년도 1년간 공시열람 시스템에 등록된 공익법인의 수치를 나타낸다. 문화·예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국세통계연보』의 경우 773개 공익법인이 있으나 공시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이 229개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결산서류 공시대상법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1) 손원익,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 『재정포럼』 2012년 4월호

박태규·손원익·김진, 『모금기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재정학회, 2011을 발췌 요약함

〈표 II-10〉 201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의 공익법인 현황
(단위: 개)

	전체	교육	학술·장학	사회복지	의료	문화	기타
유형별 검색결과	5,077	1,448	1,206	1,015	698	229	481

주: 2011년 8월 16일 기준

자료: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열람 시스템

박태규·손원익·김진, 『모금기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재정학회, 2011

2011년 8월 동안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상 5,843개의 법인이 검색되었지만,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외한 4,804개만을 반영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익법인은 교육, 학술장학, 사회복지, 의료, 문화, 기타 등 6개로 구분되며, 2010년 결산서류상 기부금수익이 있는 공익법인은 1,700개로 나타났다. 〈표 II-11〉은 각 유형별 법인 수와 기부금 수익이 있는 모금기관 수를 정리한 것으로 유형별 기부금 수익 발생 법인비율을 나타낸다.

〈표 II-11〉 유형별 기부금 수익 발생 법인 현황

(단위: 개, %)

유형구분	교육	학술장학	사회복지	의료	문화	기타	계
유형별 법인 수 [㉠]	1,184	1,195	1,050	661	209	340	4,804
기부금 수익 발생 법인 수 [㉡]	436	316	584	121	78	165	1,700
유형별 기부금 수익발생법인비율 ([㉡] / [㉠])*100	37	26	56	18	37	49	35

자료: 손원익,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 『재정포럼』 2012년 4월호(재구성)

원자료: 박태규·손원익·김진, 『모금기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재정학회, 2011(재구성)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서 적출한 전체 1,700개 모금기관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기관을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국세청 공익법인시스템에 등록된 법인 중 기부수입액 상위 300위까지의 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심층설문조사 결과 110개 공익법인에서 응답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팩스 및 이메일 조사를 통해 300개 법인에 전수 전화 후 공문 및 설문지를 전달, 회수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300개 기관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결과와 국세청 공시시스템의 결과를 비교하면 국세청 공익법인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설문결과[㉠]와 공시자료[㉡]의 차이([㉡]-[㉠])를 보면, 두 가지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 학술장학, 사회복지, 문화 관련 공익법인은 공시자료 보다 많은 금액의 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과 의료의 경우 공시자료보다 적은 금액의 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결과와 공시자료가 차이가 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문화 분야의 경우 그 차이가 가장 작게 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 분야가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나타난 6개 법인유형별로 기부금 수익규모와 그에 대한 비중을 분석하면 <표 II-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12〉 유형별 기부금 수익규모 비교 현황

(단위: 원, %)

유형	기부금 수익규모			비중	
	설문결과 [㉠]	공시자료 [㉡]	차이 ^(㉡-㉠)	설문 결과	공시 자료
교육	196,322,560,008	198,667,142,112	2,344,582,104	23.6	26.1
학술 장학	246,297,250,000	236,286,904,529	-10,010,345,471	29.6	31
사회 복지	264,956,090,000	253,394,640,847	-11,561,449,153	31.9	33.3
의료	21,896,009,900	31,367,188,879	9,471,178,979	2.6	4.1
문화	9,101,810,000	9,101,807,610	-2,390	1.1	1.2
기타	92,777,064,080	32,991,161,627	-59,785,902,453	11.2	4.3
계	831,350,783,988	761,808,845,604	-69,541,938,384	100	100

자료: 박태규·손원의·김진, 『모금기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재정학회, 2011, 재구성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 연차보고서와 공시시스템의 비교

〈표 II-13〉은 공시시스템 공시자료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1개 모금단체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부분 발췌한 내용이며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종교

법인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⁶²⁾ 공시대상 서류에는 ①대차대조표, ②손익계산서, ③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④대표자·이사·출연자 등 기본사항, ⑤주식보유 현황 등이 있다.⁶³⁾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상의 금액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각 모금기관의 자료를 통해 집계한 모금액과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와 비교해보기 위해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표 II-13>과 같이 재정리하였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수입의 합계를 도출하였고, 손익계산서는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각 모금단체마다 회기가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단체는 12월 결산 법인으로 2011년 자료를 수록하였다.

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의3

63) 부록 참조

〈표 II-13〉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공시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단위: 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수입	지출	잔액	
월별 합계액	380,733,975,665	342,272,773,595	277,277,925,630	
손익계산서	발생금액	합계금액		
사업수입 중 기부금 수입		369,244,690,521		
금전수입	307,006,153,232			
물품수입	62,238,537,289			
월드비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수입	지출	잔액	
월별 합계액	143,438,050,617	139,195,658,020	4,242,392,597	
손익계산서	발생금액	합계금액		
수입합계 중 공익사업 합계		163,929,610,126		
① 기부금	143,436,250,617			
② 보조금	13,016,434,938			
③ 전입액				
대한적십자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수입	지출	잔액	
월별 합계액	72,593,299	68,901,780	9,187,233	
손익계산서	발생금액	합계금액		
I. 수입합계		784,655,551,928		
1. 공익사업 합계		133,200,058,099		
① 기부금		72,593,299,395		

〈표 II-13〉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공시자료(계속)

어린이재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월별 합계액	수입	지출	잔액	잔액
손익계산서	73,916,621,748	82,710,876,980		899,861,804
사업수입 중 기부금 수입	발생금액	합계금액		
① 후원금수입	73,916,621,748	73,916,621,748		
유니세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수입	지출	잔액	잔액
월별 합계액	71,154,543,552	71,154,543,552		2,810,501,186
손익계산서	발생금액	합계금액		
사업수입 중 기부금 수입	71,154,543,552	71,185,773,552		
① 기부 후원금	71,154,543,552			
② 물품 기부금	31,230,000			
굿네이버스(사회복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수입	지출	잔액	잔액
월별 합계액	1,696,041,492	1,696,041,492		0
손익계산서	발생금액	합계금액		
사업수입 중 기부금 수입		1,841,988,642		
① 본부후원금품수입	37,311,898			
② 시설회계후원금수입	1,804,676,744			

〈표 II-13〉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공시자료(계속)

세이브더칠드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월별 합계액	수입	지출	잔액	
손익계산서	22,079,714,519	21,200,680,382		6,938,248,989
사업수입 중 기부금 수입	발생금액	합계금액		
①단체후원금	4,288,054,175	22,079,714,519		
②개인후원금	17,567,848,187			
③후원물품수입	228,812,157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월별 합계액	수입	지출	잔액	
손익계산서	12,907,751,881	8,462,605,556		54,841,953,389
사업수입 중 기부금 수입	발생금액	합계금액		
①기금수입	8,102,807,403	10,712,016,262		
②현물기부수입	240,504,207			
③운영후원금수입	536,952,703			
④이자수입	1,583,645,979			
⑤배당금수입	212,510,150			
⑥사업수입	35,595,820			
⑦매출액				

〈표 II-13〉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공시자료(계속)

아이들과 미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수입	지출	잔액	
월별 합계액	5,894,892,268	6,662,617,587		-1,736,761,681
손익계산서	발생금액	합계금액		
사업수입 중 기부금 수입		5,894,892,268		
부산기부금	35,865,000			
일반기부물품	201,261,150			
지정기탁물품	3,748,000			
운영기부금	141,000,000			
일반기부금수입	282,601,704			
기업CSR	4,389,553,922			
해외,재단지정기부금	840,862,492			
구세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수입	지출	잔액	
월별 합계액	-	-		0
손익계산서	발생금액	합계금액		
사업수입 중 기부금 수입		1,360,152,835		
①지정기부금	859,430,437			
②비지정후원금	500,722,398			

〈표 II-13〉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공시자료(계속)

한국여성재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수입	지출	잔액
월별 합계액	발생금액	합계금액	
손익계산서	4,527,942,129	4,565,811,464	-37,869,335
사업수입 중 기부금 수입			
①기본재산이자수입		4,463,642,129	
②임대료수입			
③기업지정기부금	4,072,588,567		
④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231,654,162		
⑤여성건강지원기부금	158,666,000		
⑥여성가장지원기부금	233,400		
⑦결연기부금	500,000		

주: 손익계산서 회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15기), 어린이재단(제32기), 어린이버스(제16기), 세이브더칠드런(제29기), 아름다운재단(제12기), 아이들과 미래(제12기), 구세군(제21기), 한국여성재단(제13기), 유니세프(제19기): 2011년 01월 0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월드비전(제0기), 대한적십자사(제0기)

자료: 2013년 1월 4일 기준,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와 공시시스템의 손익계산서상의 기부수입액을 비교하여 이 두 내용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II-14>와 같이 대부분 단체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월별 합계액) 수입액과 손익계산서상 기부수입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두 자료 간에 차이가 나는 모금단체의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단체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다. 그 결과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에는 이자수입·보조금수입·잡수입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자료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실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1년 기부수입액은 약 3,692억원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액은 이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가 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부자나 주민번호 및 주소 누락, 익명의 기부자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에서의 수입의 총 합계액은 129억원이지만, 실제 기부금 영수증 발행액은 76억원이며, 129억원에는 이자수입 및 이월금 등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 II-14〉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상 공시자료 비교

(단위: 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월별 합계액) 수입 ㉠	국세청 공시시스템상 손익계산서의 기부수입액 ㉡	차이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380,733,975,665	369,244,690,521	11,489,285,144
월드비전	143,438,050,617	143,438,050,617	0
대한적십자사	72,593,299,000	72,593,299,395	0
어린이재단	73,916,621,748	73,916,621,748	0
유니세프	71,154,543,552	71,154,543,552	0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1,696,041,492	1,841,988,642	-145,947,150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널	53,004,360,681	57,608,872,971	-4,604,512,290
세이브더칠드런	22,079,714,519	22,079,714,519	0
아름다운재단	12,907,751,881	8,880,264,313	4,027,487,568
아이들과미래	5,894,892,268	5,894,892,268	0
(사회복지법인) 구세군 복지재단	-	1,360,152,835	-
한국여성재단	4,527,942,129	4,527,942,129	0

주: 1. 국세청 공시시스템상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 아름다운재단의 기부수입액은 기부금, 현물기부수입, 운영후원금 수입의 합계액임
- 월드비전의 경우 기부금은 143,438,050,617원이지만, 공익사업의 합계액은 163,929,610,126원임
- 유니세프의 경우 기부후원금은 71,154,543,552원이지만, 현물 기부를 포함한 기부금 수입 총계는 71,185,773,552원임
- (사단법인)굿네이버스 인터네셔널의 기부금수입액 57,608,872,971원은 회비수입 43,862,411,364원, 기부금품수입 13,746,461,607원의 합계액임

- (사회복지법인)구세군 복지재단의 기부금수입액은 지정기부금 859,430,437원과 비지정후원금 500,722,398원의 합계액임
 - 한국여성재단의 경우 기부금수입의 총계는 4,463,642,129원이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에는 전입금 항목의 특정명의 기금 32,100,000원과 협찬금 32,2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세가지의 합계액은 4,527,942,129원임
2. 구세군대한본영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연차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지 않음

자료: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각 모금기관의 내부 자료

이상의 분석에 추가하여 주요 모금기관의 모금 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와 공시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모금기관의 연도별 모금액과 증가율을 분석하였다. <표 II-15>는 각 모금기관의 연도별 연차보고서 및 내부 자료를 통해 집계한 자료이며, 이를 통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주요 모금기관의 연도별 모금액이 대부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우리나라 주요 모금기관의 총모금액은 약 1,306억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8,331억원으로 약 6.3배 증가하여 모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5〉 주요 모금기관의 연도별 모금액(2000~2011년)

기관명	(단위: 백만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30,577	170,837	275,258	273,769	346,956	430,514	422,840	511,582	538,982	646,451	758,951	833,146
증가율	-	30.8	61.1	-0.5	26.7	24.1	-1.8	21.0	5.4	19.9	17.4	9.7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958	62,501	161,387	138,246	175,631	214,697	217,694	267,340	270,286	331,862	339,556	369,245
증가율	-	22.7	158.2	-14.3	27.0	22.2	1.4	22.8	1.1	22.8	2.3	8.74
월드비전	16,470	16,843	19,437	20,990	24,799	33,929	40,630	57,857	71,056	96,257	126,104	144,692
증가율	-	2.3	15.4	8.0	18.1	36.8	19.8	42.4	22.8	35.5	31.0	14.74
대한적십자사	39,517	45,788	44,028	46,317	62,846	84,628	51,521	52,227	58,384	61,561	79,873	81,346
증가율	-	15.9	-3.8	5.2	35.7	34.7	-39.1	1.4	11.8	5.4	29.7	1.84
어린이재단	4,762	20,469	23,550	26,857	42,384	46,015	52,383	58,474	51,337	56,241	68,943	73,917
증가율	-	329.8	15.1	14.0	57.8	8.6	13.8	11.6	-12.2	9.6	22.6	7.21
유니세프	5,286	7,427	6,315	10,634	11,338	15,374	15,812	20,716	26,236	31,039	59,907	62,828
증가율	-	40.5	-15.0	68.4	6.6	35.6	2.8	31.0	26.6	18.3	93.0	4.88
굿네이버스	5,817	14,021	14,123	14,849	14,862	17,315	22,070	25,740	29,769	37,300	47,835	59,451
증가율	-	141.0	0.7	5.1	0.1	16.5	27.5	16.6	15.7	25.3	28.2	24.28

〈표 11-15〉 주요 모금기관의 연도별 모금액(2000~2011년)(계속)

기관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이브더칠드런	-	-	-	-	2,247	3,039	5,946	7,381	10,162	12,470	17,585	22,397
증가율	-	-	-	-	-	35.2	95.7	24.1	37.7	22.7	41.0	27.36
아름다운재단	143	1,350	2,164	12,377	9,281	11,019	10,141	13,862	12,906	11,224	8,178	8,880
증가율	844.1	60.3	472.0	472.0	-25.0	18.7	-8.0	36.7	-6.9	-13.0	-27.1	8.59
아이들과미래	5,834	142	1,627	773	583	499	1,105	1,775	2,156	2,824	4,761	8,508
증가율	-97.6	1,045.8	-52.5	-24.6	-24.6	-14.4	121.4	60.6	21.5	31.0	68.6	23.81
구세군대한본영	1,791	2,280	2,462	2,401	2,578	2,928	2,799	3,107	3,072	3,769	3,356	-
증가율	-	27.3	8.0	-2.5	7.4	13.6	-4.4	11.0	-1.1	22.7	-11.0	-
한국여성재단	-	16	165	324	408	1,071	2,738	3,103	3,619	1,905	2,853	4,496
증가율	-	931.3	96.4	96.4	25.9	162.5	155.6	13.3	16.6	-47.4	49.8	57.59

주: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0~2001년은 전년 9월~해당연도 10월, 2002년은 2001.10~2002.12, 2003년 이후는 해당연도 1월~12월임

2.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2004년 어린이보호재단과 합병 이후 모금액

자료: 각 모금기관의 연도별 연차보고서 및 내부자료

손원익·김상현, 『공익단체의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 관한 경제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1

〈표 II-16〉은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의 손익계산서상의 기부수입액과 해당 모금기관에서 발행하는 연차보고서상의 기부수입액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16〉 공익법인 공시시스템과 연차보고서 기부수입액 비교

(단위: 원)

	연차보고서의 기부수입액 ㉠	국세청 공시시스템상 손익계산서의 기부수입액 ㉡	차이 ㉠-㉡
굿네이버스	59,450,861,613	59,450,861,613	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69,244,690,521	369,244,690,521	0
아름다운재단	8,880,264,313	8,880,264,313	0
대한적십자사	81,345,750,000	72,593,299,395	8,752,450,605
월드비전	144,692,374,817	143,436,250,617	1,256,124,200
유니세프	71,185,773,552	71,185,773,552	0
어린이재단	73,916,622,000	73,916,621,748	252
세이브더칠드런	22,396,647,000	22,079,714,519	316,932,481
아이들과미래	8,508,009,611	5,894,892,268	2,613,117,343
한국여성재단	4,495,742,129	4,463,642,129	32,100,000
구세군대한본영	-	1,360,152,835	-

- 주: 1. 굿네이버스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이 모두 포함되며, ①기부금 15,588,450,249원과 ②회비 43,862,411,364원을 합한 결과임
2. 아름다운재단의 국세청 공시시스템상 손익계산서의 기부금액은 ①기부금 8,102,807,403원, ②현물기부수입 240,504,207원, ③운영후원금 수입 536,952,703원의 합계액으로 총 합산액은 8,880,264,313원임
3. 월드비전은 국세청 공시시스템상 손익계산서의 기부금은 143,438,050,617원 이지만, 공익사업의 합계액은 163,929,610,126원임
4. 유니세프는 공시시스템상 손익계산서의 기부후원금은 71,154,543,552원이지만, 현물기부를 포함한 기부금 수입 총계는 71,185,773,552원임
5. 구세군대한본영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연차보고서가 수록되어있지 않음
6. 한국여성재단의 연차보고서상 총기부금액은 ①기부금액 423,153,562원, ②기업지정기부금 4,072,588,567원, ③행사협찬 32,200,000원의 합계액임
- 자료: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각 모금기관의 홈페이지 및 연차보고서

전체 분석대상 11개 모금기관 중 연차보고서상의 기부금 규모와 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손익계산서상의 기부금 규모가 상이한 모금단체가 <표 I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단체로 확인되었다. 두 자료의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하여 각 모금단체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난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국세청 공시시스템(725억 9,329만원)과 연차보고서(813억 4,570만원)상의 금액 차이는 방송모금액과 기부물품이 공시시스템상의 기부금 항목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43개의 본·지사 일반회계와 병원특별회계, 혈액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로 나뉘져 있고, 각각의 회계마다 기부수입이 있기는 하나 연차보고서에는 본·지사 일반회계만 따로 기부수입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미래의 경우에는 국세청 공시시스템(58억 9,489만원)과 연차보고서(85억 800만원)상의 금액 차이는 전년도(2010년도) 이월금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기부금 규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1년 이내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3.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 소재지
5. 기타⁶⁴⁾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특정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⁶⁵⁾

동법은 기부금품의 사용에 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어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⁶⁾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의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⁶⁷⁾ 모집한 기부금의 올바른 사용을 도모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⁶⁸⁾

64)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4

65)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5

66)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12

67)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13

68)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제도 해설서』, 2002년 1월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⁶⁹⁾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⁷⁰⁾

2012년에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현황(12.11.20 현재)은 <표 II-17>과 같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2년 11월 기준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으로 총 524억 500만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5>에서 분석한 11개 모금단체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공시 목록에는 대한적십자사·굿네이버스·한국여성재단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금단체에서 모금하는 전체 규모 중에서 일부만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모금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금단체들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모금단체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법률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며, 그 결과 모금단체의 투명성도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69)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84

70)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14

〈표 Ⅱ-17〉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2012년)

등록 기관	연도별 (등록 번호)	등록 구분	모집자		등록내용				비고
			단체명	대표자	모집목적	목표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소계	2012년					52,405			
행안부	12-01	09-11 2차 변경	(사)김만덕기념 사업회	고두심	불우이웃돕기, 해외빈곤아동지원		09.07.29~09.12.31	12.06.30	사용기한 연장
행안부	12-02	11-07 변경	재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	박만희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400	11.03.14~12.01.31	12.11.30	목표액증액 45→49억
행안부	12-03	11-16 변경	전국재해구호 협회	최학래	국내외 재난 피해주민 돕기		12.01.01~12.12.31	13.12.31	모집 및 사용기한 연장
행안부	12-04	10-01 2차 변경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아이티지진피해 이재민 지원		10.01.15~10.03.31	12.12.31	사용기한 연장
행안부	12-05		(사)이태석사랑 나눔	이태영	남수단 오지마을 지원	3,000	12.01.27~13.01.26	14.12.31	
행안부	12-06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박만희	국내외 구호 및 개발지원	3,000	12.02.01~12.11.30	12.11.30	
행안부	12-07		굿네이버스	이일하	국내외 소외아동 지원 및 국제구호	6,481	12.01.30~12.12.31	12.12.31	

(단위: 백만원)

〈표 II-17〉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2012년)(계속)

등록 기관	연도별 (등록 번호)	등록 구분	모집자		등록내용				비 고
			단체명	대표자	모집목적	목표액	모집기간	사용 기한	
행안부	12-08		한국여성재단	조형	남녀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복지사업 등	3,095	12.01.01~12.12.31	13.12.31	
행안부	12-09	09-10 3차 변경	(사)세계결핵제로 운동본부	이윤구	북한 결핵 어린이환자 돕기		09.07.10~10.12.31	12.12.31	사용기간 변경
행안부	12-10	10-06 2차 변경	어업인교육문화 복지재단	이종구	어업인 교육 및 복지증진 지원		10.03.03~13.03.02	13.12.31	사용기한(2차) 연장 12.3.3~13.3.2
행안부	12-11		영산조용기자신 재단	조용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장애인지원, 자원봉사자 활성화 등 복지사업	3,529	12.04.17~12.12.31	12.12.31	
행안부	12-12		통일을생각하는 사람들	문무홍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민간차원의 통일제원 마련	1,200	12.07.01~13.06.30	14.06.30	
행안부	12-13		K-biz 사랑나눔재단	김기문	사회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	3,000	12.07.25~13.07.24	14.12.31	

〈표 Ⅱ-17〉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2012년)(계속)

등록 기관	연도별 (등록 구분 번호)	등록 구분	모집자		등록내용				비 고
			단체명	대표자	모집목적	목표액	모집기간	사용 기한	
행안부	12-14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경준	위기가정 및 미자립시설 지원	1,100	12.07.01~13.06.30	13.07.14	
행안부	12-15		재단법인 한국의료지원 재단	유승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 및 질병예방사업	3,000	11.12.23~12.12.22	12.12.22	
행안부	12-16		홈플러스 e파란재단	이승한	나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우이웃 지원	1,600	12.03.01~13.02.28	13.07.31	
행안부	12-17	12-07 변경	굿네이버스	이일하	국내외 소외아동 지원 및 긴급구호	500	12.01.30~12.12.31	12.12.31	금액변경 (사업추가)
행안부	12-18		(사)김만덕기념 사업회	고두심	나눔쌀모금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3,000	12.10.01~13.01.31	13.12.31	
행안부	12-19		(재)대한국세균 유지재단법인	박만희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7,000	12.11.01~13.10.31	13.12.31	
행안부	12-20		(사)나눔과 기쁨	서경석	소외계층의 겨울나기 지원	2,500	12.10.01~13.10.31	13.10.30	
행안부	12-21	11-22 변경	(재)푸르메	김성수	푸르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조성	10,000	12.10.31~13.10.30	13.10.30	모집기간 및 금액연장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현황」(12.11.20 현재)

나. 기부 관련 분야 통계 현황

비영리단체의 재원은 자체 수입이나 이자수입,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민간의 기부이다. 비영리단체는 민간 영역에서 기부를 받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부 관련 통계는 비영리단체의 실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따라서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사회조사를 통해 기부 관련 통계의 내용 및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1) 국세통계연보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그 규모를 정확히 집계한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세무자료를 통한 통계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통계라 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는 각 세무서에서 수집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전수 자료를 국세청에서 집계하여 수록한 것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를 통해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한 개인 중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은 개인의 공제 내역을 정리·집계하고 있으며,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법인세 신고법인 중 기부금 공제 대상 법인의 내역을 정리·집계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서 집계되는 기부금에 대한 통계는 정확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개인과 법인 모두 기부금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의 대상 기부금 규모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기부를 하였지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부금의 규모는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제 기부를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또는 국세청 신고 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세통계연보』에서 파악되는 기부금의 규모에는 기부는 했지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부금의 규모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부는 했지만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대상 기부금의 규모가 자체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으며, 면세점 이하의 개인이나 결손법인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부금이 제외된다. 반면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의 대상 기부금은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는 문제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세통계연보』에서 집계되는 기부금 규모가 실제 기부금 규모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세통계연보』는 현존하는 국내의 통계 중에서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통계로 평가되고 있다.

가) 세무자료를 통한 개인의 기부금

2011년 기준 기부금 총액은 개인이 7조 900억원이고, 법인이 4조 700억원으로 총 11조 1,5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개인이 63.5%, 법인이 36.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개인과 법인의 기부 비율은 1999년 이전 약 3:7에서 2000년 이후 약 6:4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6.4:3.6의 비율로 개인 기부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8〉 법인과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단위: 조원, %)

	1999	2001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기부금 계	2,90	4,67	5,90	6,79	8,76	9,04	9,61	10,03	11,15
개 인	근로소득	0,80	2,70	3,20	3,58	4,15	4,27	4,64	5,18
	종합소득	0,05	0,28	0,54	0,74	1,28	1,40	1,51	1,90
	소계	0,85	2,98	3,74	4,32	5,43	5,67	6,15	7,09
	비율	29,3	63,8	63,4	63,6	62,0	64,0	65,1	63,5
법 인	금액	2,05	1,69	2,16	2,47	3,33	3,38	3,46	4,07
	비율	70,7	36,2	36,6	36,4	38,0	37,4	36,0	34,9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청 내부자료

근로소득자의 개인기부 현황은 〈표 II-19〉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기부인원 및 기부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I-19〉 근로소득자의 개인기부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기부인원	기부금액	급여총액 상위 10%	
			기부인원	기부금액
2005	3,101,566	3,578,205	932,087	1,596,101
2006	3,341,794	4,204,450	1,029,504	2,171,688
2007	3,483,207	4,154,752	1,076,944	2,163,011
2008	3,634,599	4,274,666	1,132,563	2,240,943
2009	3,931,704	4,637,220	1,190,227	2,429,950
2010	4,118,176	4,855,563	1,271,731	2,576,554
2011	4,428,337	5,184,963	1,320,927	2,728,684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급여총액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기부 현황을 보면, 2011년 기준 기부인원 수가 약 132만명으로 전체 기부인원 약 443

만명의 29.8%에 해당하고, 기부금액 규모가 약 2조 7,287억원으로 전체 기부금 규모 약 5조 1,850억원의 52.6%에 이르고 있다. 또한 <표 II-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여총액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1인당 기부금 규모는 2005년 약 171만원 수준에서 2011년 약 207만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0>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급여총액 상위10% 기부인원 수 ㉠	급여총액 상위10% 기부액 ㉡	급여총액 상위10% 1인당 기부금액 ㉢/㉠
2005	932,087	1,596,101	1.71
2006	1,029,504	2,171,688	2.11
2007	1,076,944	2,163,011	2.01
2008	1,132,563	2,240,943	1.98
2009	1,190,227	2,429,950	2.04
2010	1,271,731	2,576,554	2.03
2011	1,320,927	2,728,684	2.07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21>은 종합소득자의 기부 현황을 나타내며, 2011년 기준 종합소득자는 68만 9,252명이고 기부금의 규모는 약 1조 9,017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종류별·소득규모별 기부인원과 기부금 규모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면, 소득구간별 기부금 규모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부금 세제혜택에 대한 세제개편을 구상할 때 이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개편작업이 진행되어야 세제개편의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관련 통계의 구축 및 공개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1〉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 도	전 종합소득자		소득규모 5억원 이상	
	인원	기부금액	인원	기부금액
2006	433,783	1,140,756	3,972	156,016
2007	500,354	1,283,316	4,977	175,898
2008	557,159	1,395,708	5,401	198,500
2009	594,931	1,512,795	5,929	215,759
2010	643,969	1,673,999	7,209	245,380
2011	689,252	1,901,707	9,330	339,063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세무자료를 통한 법인의 기부금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법인의 기부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는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을 기록하며,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각 기부금별 신고 현황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통계연보』에서는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법인의 기부지출액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 관련 세제와 기부지출액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기부금을 법인 규모별, 상장·비상장·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자산규모별·소득금액규모별·과세표준규모별·흑자법인 10분위로 분류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표 II-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기부금공제 총액은 약 4조 680억원에 이른다.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이 1조 6,447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기부금은 약 883만원으로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추세가 2011년 증가로 바뀌었다. 기업당 평균 기부금의 감소 원인은 경기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고법인을 법인의 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2011년 기준 기부금 총액은 중소기업보다 일반법인이 약 7.5배가량 더 많고, 기업 한 곳당 평균 기부금은 일반법인이 약 3,920만원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약 30배 많게 나타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는 기부금 신고 현황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기부금과 그렇지 않은 법인을 구분하여 기부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011년 기부금 총액은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당 평균 기부금은 상장법인이 약 10억원이고, 비상장법인이 약 498만원으로 기업당 기부금의 규모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22〉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신고 법인 수 (1)	기업당 평균기부액 (2)=(3)/(1)	기부금		
			소계 (3)=(4)+(5)	법정·특례 (4)	지정 (5)
2006	352,647	7.93	2,795,622	1,667,204	1,128,418
2007	372,141	8.93	3,325,078	1,973,408	1,351,670
2008	398,331	8.48	3,378,565	1,843,187	1,535,378
2009	419,420	8.25	3,460,709	1,895,287	1,565,422
2010	440,023	7.96	3,504,459	2,001,711	1,502,748
2011	460,614	8.83	4,068,045	2,423,360	1,644,685
법인규모별	460,614	8.83	4,068,045	2,423,360	1,644,685
일반법인	91,514	39.20	3,587,473	2,251,220	1,336,253
중소기업	369,100	1.30	480,572	172,140	308,432
상장·비상장	460,614	8.83	4,068,045	2,423,360	1,644,685
상장법인	1,781	1,000.74	1,782,312	932,797	849,515
비상장법인	458,833	4.98	2,285,733	1,490,563	795,170

주: 1.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2. 법인세 신고서 주요계정 명세서상 회사계상 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업태별 분류는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업종 등 14개로 분류된다. 2011년 업태별 기부금액을 비교·분석하면 기업당 평균 기부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7,237만원의 보건업으로 2위 금융·보험업 6,358만원에 비해 약 879만원가량 많은 액수를 기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당 평균 기부액이 두 번째로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한 개 기업당 평균적으로 약 6,358만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기·가스·수도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II-23〉 업태별 기부금 신고 현황(2011년)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신고 법인 수 (1)	기업당 평균기부액 (2)=(3)/(1)	기부금		
			소계 (3)=(4)+(5)	법정·특례 (4)	지정 (5)
계	460,614	8.83	4,068,045	2,423,360	1,644,685
농·임·어업	7,344	0.86	6,309	1,301	5,008
광업	991	2.33	2,311	1,047	1,264
제조업	99,716	13.31	1,327,220	602,723	724,497
전기·가스·수도업	1,224	49.69	60,817	40,173	20,644
건설업	80,684	2.99	241,431	123,056	118,375
도매업	93,466	2.07	193,581	73,415	120,166
소매업	13,839	6.10	84,400	41,622	42,778
음식·숙박업	4,289	3.71	15,891	8,118	7,773
운수·창고·통신업	28,345	10.32	292,540	162,153	130,387
금융·보험업	15,430	63.58	980,967	722,713	258,254
부동산업	19,843	4.46	88,407	56,220	32,187
서비스업	88,170	7.59	669,165	501,228	167,937
보건업	1,431	72.37	103,557	88,976	14,581
기타 업종	5,842	0.25	1,449	615	834

- 주: 1.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2. 법인세 신고서 주요계정 명세서상 회사계상 금액임
 3. 업태분류는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한 것으로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실적이 포함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국세통계연보』는 이 밖에 법인의 기부금을 수입(total revenue) 규모와 자산규모, 과세소득(taxable income)금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기부금을 분류하고,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서도 기부금의 규모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자료는 소득규모·자산규모·수입규모·과세표준규모에 따라 각 구간에 속하는 기업의 기부금 규모를 제공하며 각 구간별 기부금 탄력성의 추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각 구간별 기부금 탄력성 추정이 가능하게 되면, 기부금 유인정책의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II-24〉 과세표준 규모별·흑자법인 10분위별 기부금 신고 현황(2011년)

(단위: 개, 백만원)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법인 수	기부금		
		소계	법정·특례 기부금	지정기부금
0	460,614	4,068,045	2,423,360	1,644,685
5억 이하	211,707	628,912	489,187	139,725
10억 이하	223,665	185,952	66,671	119,281
20억 이하	11,738	72,023	24,586	47,437
50억 이하	6,132	109,627	47,795	61,832
100억 이하	4,120	144,497	75,351	69,146
200억 이하	1,476	111,605	59,382	52,223
500억 이하	844	178,429	95,080	83,349
1000억 이하	507	159,464	77,124	82,340
5,000억 이하	178	203,482	105,612	97,870
5,000억 초과	193	547,570	297,740	249,830
5,000억 초과	54	1,726,484	1,084,832	641,652
흑자법인 10분위	460,614	4,068,045	2,423,360	1,644,685
상위 10% 내	31,152	3,387,858	1,945,198	1,442,660
상위 20% 내	31,152	96,314	45,372	50,942
상위 30% 내	31,152	37,814	10,689	27,125
상위 40% 내	31,152	21,315	5,955	15,360

〈표 II-24〉 과세표준 규모별·흑자법인 10분위별 기부금 신고
현황(2011년)(계속)

	신고법인 수	기부금		
		소계	법정·특례 기부금	지정기부금
상위 50% 내	31,152	13,154	3,222	9,932
상위 60% 내	31,152	8,606	2,296	6,310
상위 70% 내	31,152	6,252	1,518	4,734
상위 80% 내	31,152	4,207	906	3,301
상위 90% 내	31,152	3,337	1,079	2,258
상위 100% 내	31,156	14,394	13,023	1,371
결손법인	149,090	474,794	394,102	80,69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지출이란 실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감소되는 지출로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비소비지출은 〈표 II-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적비소비지출과 사적비소비지출로 구분되며, 이는 각각 경상조세·비경상조세·연금·사회보장부담금과 이자·가구 간 이전·비영리단체로의 이전으로 나뉜다. 그리고 비소비지출 중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은 ‘종교기부금’과 ‘회비 및 기타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중 회비 및 기타기부금이란 노조, 종중, 상조회 등으로 이전된 금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회비 및 기타기부금에는 일반적인 기부금의 개념과 벗어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는 종교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도 민간에게 세부 항목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통계자료로서의 역할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표 II-25〉 항목분류 설명

코드	항목명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비소비지출 및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등의 사적 비소비지출
W1	경상조세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로 경상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W110	경상소득세	
W120	사업소득세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 원천징수자의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W130	경상재산세	토지 및 주택소유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W140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W190	기타경상세금	기타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경상활동에 따른 조세
W2	비경상조세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로 비경상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W220	비경상소득세	개인의 비경상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W240	비경상재산세	비경상적 재산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W260	부동산취득 관련세	주택 및 부동산 구입에 따라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락세 및 부가세금
W280	과징금	가구가 정부에 세금이외에 부담하는 부담금 등
W290	기타 비경상세금	기타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자산거래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조세
W3	연금	각종 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연금보험료
W320	국민연금 기여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국민연금보험료
W390	기타연금 기여금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보험료
W4	사회보장	각종 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연금보험료
W420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보험료

〈표 II -25〉 항목분류 설명(계속)

코드	항목명	
W490	기타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이외의 사회보험료
W6	이자비용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이전적 성격의 비소비지출
W620	주택대출이자	주택을 구입 또는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주택 또는 토지를 담보하고 차입한 금전에 대한 지불이자
W640	기타이자	주택 이외에 가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전에 대한 지불이자
W7	가구간 이전지출	가구 간 이전하는 현금지출로 국내에 송금하는 경우, 경상적 송금은 국내학생가구송금, 기타송금에 분류하고 비경상적인 현금지출은 교제비에 분류함.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경상·비경상을 구분하지 않고 국외학생및환자에 대한송금, 기타송금(국외)으로 구분
W710	교제비	친지, 친구 등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
W720	경조비	축의, 조의 등 다른 가구의 애경사 행사 시 금전으로 지출한 비용
W730	국내학생가구 송금	국내에 거주하는 학생가구를 위한에 대한 경상적 지출
W740	국외학생 및 환자에 대한 송금	국외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나 3개월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송금한 금액
W790	기타송금(국내)	국내에 거주하는 비학생가구를 위한 경상적 송금
W795	기타송금(국외)	국외에 거주하는 비학생가구를 위한 경상적 송금
W8	비영리단체로 이전	종교단체, 정당, 종중, 사회운동단체, 자생상조회 등으로 이전
W820	종교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특정되지 않은 금액
W840	회비 및 기타기부금	노조, 종중, 상조회 등 비영리단체에의 회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표 II-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에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74%이며,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중 종교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7.3%이다. 그러나 세무자료(국세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개인기부금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약 86.3%에 이르고 있어 「가계동향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26> 우리나라의 기부금 규모

(단위: %)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중 종교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
	비영리단체 로의 이전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기부금	
2003	2.94	0.98	1.96	33.4
2004	2.91	1.00	1.92	34.2
2005	2.72	1.00	1.72	36.8
2006	2.70	1.04	1.66	38.6
2007	2.81	1.09	1.73	38.6
2008	2.80	1.06	1.74	37.9
2009	2.71	1.00	1.71	37.0
2010	2.62	1.02	1.60	38.8
2011	2.60	1.01	1.59	38.9
2012	2.61	1.01	1.60	38.6
평균	2.74	1.02	1.72	37.3

주: 소득이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말함
 자료: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3) 통계청 사회조사(나눔문화)

통계청에서는 매년 5개 부문씩 부문별 2년 주기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사회조사」의 사회참여 부문 중 기부·자원봉사에 대하여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을 대상으로 2011.7.15~29(15일)동안 조사된 결과를 참고하였다.

2011년 사회조사(조사대상 기간: 2010.7.15~2011.7.14)에서 조사된 나눔문화 관련 항목은 <표 II-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개 항목으로 2009년에 비해 14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표 II-27> 2011년 나눔문화 관련 사회조사 항목

구분	항목명
기존항목 (3개 항목)	기부경험 및 기부경로별 현금기부횟수,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참여 인구 및 횟수(시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신규항목 (14개 항목)	기부하지 않은 이유, 기부경로별 현금기부금액, 현금 정기기부, 물품기부, 물품 정기기부, 기부이유, 기부 희망 분야, 기부대상 인지경로, 향후 기부 의사, 유산기부 의사, 기부 문화 확산, 정기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지난 1년간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36.4%이며, 기부형태는 주로 물품보다는 현금으로 나타났다.

<표 II-28> 기부경험과 형태(2011년)

(단위: %)

	기부 경험		기부 형태	
	없음	있음	현금기부	물품기부
비중	63.6	36.4	95.6	23.4

주: 기부형태는 복수응답으로 100%를 초과함

자료: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보고서』, 2011

현금을 기부한 사람은 34.8%로 2009년 조사된 32.3%에 비해 2.5%p 증가하였으며 기부경로는 모금단체(46.9%)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이어서 언론기관(21.8%)과 종교단체(21.1%)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9〉 기부경로별 현금기부자 비중

(단위: %)

	현금 기부자	기부 경로					
		대상자에게 직접	언론 기관	모금 단체	종교 단체	기업 (직장)	기타
2009	32.3	15.9	29.5	39.7	23.2	16.8	2.9
2011	34.8	12.1	21.8	46.9	21.1	13.8	8.1

주: 1. 복수응답임

2. 2009년은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자료: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보고서』, 2011

지난 1년간 현금기부자는 1인당 평균 16만 7천원을 기부하였으며, 기부경로는 ‘대상자에게 직접’이 35만 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종교단체’가 23만 9천원, ‘기업(직장)’이 13만 3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30〉 1인당 평균 현금기부금액(2011년)

(단위: 천원)

구 분	1인당 평균	기부 경로					
		대상자에게 직접	언론 기관	모금 단체	종교 단체	기업 (직장)	기타
기부금액	167	355	33	96	239	133	38

주: 복수응답임

자료: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보고서』, 2011

3. 민간 차원에서의 자료

가.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0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조사하여 『2010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였다. 2010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및 추이와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팩스, e-mail, 전화를 통해 조사되었다.⁷¹⁾

『2010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개사 평균 사회공헌비용 역시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사회공헌실태 조사에 응답한 220개 기업은 2010년 한 해 동안 총 2조 8,735억 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규모는 2009년(2조 6,517억 5,600만원) 대비 약 8.4% 증가한 것이며, 2008년(2조 1,601억 4,100만원)에 비해서는 약 33.0% 증가된 금액이다. 1개사별 평균 사회공헌비용은 130억 6,100만원으로 2009년 120억 5,300만원에 비해 약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총비용의 증가수준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71) 조사대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조사기간: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응답 수: 220개 기업(응답률: 44%)

〈표 II-31〉 기업 사회공헌비용 총지출액 및 평균지출액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총지출액	평균지출액
2002년 (202개사)	1,086,594	5,379
2004년 (227개사)	1,228,432	5,412
2005년 (244개사)	1,402,510	5,747
2006년 (202개사)	1,804,816	8,979
2007년 (208개사)	1,955,642	9,402
2008년 (209개사)	2,160,141	10,336
2009년 (220개사)	2,651,756	12,053
2010년 (220개사)	2,873,505	13,061

자료: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각 연도

2010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4%로, 2009년의 0.23%에 비해 소폭 상승한 반면 2010년 응답기업들의 경상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은 3.2%를 기록하여, 2009년 4.8%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 2010년 경상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출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2년 (185개)	2004년 (193개)	2005년 (189개)	2006년 (193개)
경상이익	59,816,055	55,397,171	57,686,151	67,072,594
사회공헌활동 지출비용	746,847	1,032,442	1,164,246	1,789,174
비율추이	1.2	1.9	2.0	2.7
구분	2007년 (206개)	2008년 (208개)	2009년 (212개)	2010년 (214개)
경상이익	78,321,669	53,498,091	55,554,349	90,791,410
사회공헌활동 지출비용	1,954,631	2,160,063	2,646,692	2,872,523
비율추이	2.5	4.0	4.8	3.2

주: 해당 항목 응답기업 기준

자료: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10년

〈표 II-33〉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추이

(단위: %)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용
2002년 (190개사)	0.2
2004년 (201개사)	0.2
2005년 (197개사)	0.2
2006년 (194개사)	0.3
2007년 (205개사)	0.2
2008년 (208개사)	0.1
2009년 (219개사)	0.2(0.23)
2010년 (218개사)	0.2(0.24)

자료: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각 연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공헌백서』는 그 대상이 초대형기업으로 제한된 한계가 있지만, 초대형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이 전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료의 유용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시혜적 기부에서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크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본 백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기업 사회공헌의 최근 추이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은 개인기부지수와 기업기부지수를 격년으로 조사하여 기빙인덱스(giving index)를 발표하고, 국제 기부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2000년부터 매년 총 11회의 조사·발표자료 및 영문판 Giving Korea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기빙인덱스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및 자원봉사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 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의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우리나라의 기부활동 관련 정책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이 구축하는 자료이다.

〈표 II-34〉 Giving Korea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모집단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표본 수	1,029명
표본추출	· 1단계: 다단계 지역표본추출(조사지점 선정) · 2단계: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응답자 선정)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0%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2. 6. 21 ~ 7. 26

자료: 아름다운재단, 「기빙인덱스 조사요약」, 2012

〈표 II-35〉는 Giving Korea의 조사내용을 보여준다. Giving Korea가 기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자원봉사실태에 대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기존의 통계와 차별화되는 정보로 평가할 수 있다. 조사대상 인원의 규모가 제한적인 한계는 있으나 시계열자료가 축적될 경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이와 같은 노력이 더욱 확대될 때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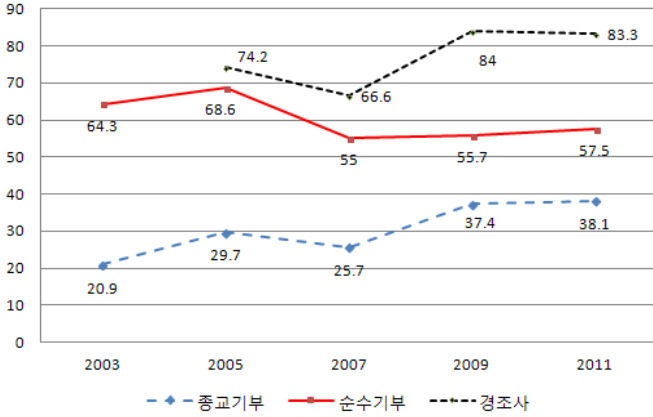
〈표 II-35〉 Giving Korea 2010 조사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자원봉사 실태	자원봉사 참여 여부 자원봉사 활동처 자원봉사 기간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빈도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 자원봉사 활동 방법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	유산 기부 의향 유산 기부 희망 비율 유산 기부 희망 행태 유산 기부 장애 요인
		나눔 교육에 대한 인식	나눔 교육 경험
		기부와 인터넷 활용	기부 시 인터넷 활용 경험 기부 시 인터넷 활용도
기부 실태	기부 참여 여부 기부처 기부금액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정기적 기부 참여 빈도 기부처 인지 경로 기부 방법 기부의 내적동기 기부의 외적요인 기부 확대 계획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개부 문화에 대한 인식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 해 필요한 것
		시설/기관/ 단체에 대한 신뢰도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기부 의향 및 계획	향후 1년 내에 기부 할 의향 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 사항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분야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대상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단위	기부 관련 경험	기부 중단/변경 여부 기부 지속 여부 기부 대상 조직에 대한 인식

자료: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그림 II-2] 순수 기부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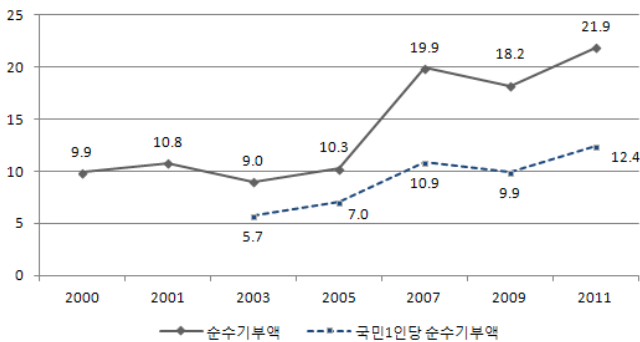


자료: 아름다운재단, 「기빙인덱스 조사요약」, 2012

조사 결과 순수 기부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의 비율이 57.5%, ‘경험없음’의 비율이 42.5%로 나타났으며, 순수 기부 참여비율은 2009년 55.7%에 비해 1.8%p 증가하였다.

[그림 II-3] 순수 기부 평균금액 변화 추이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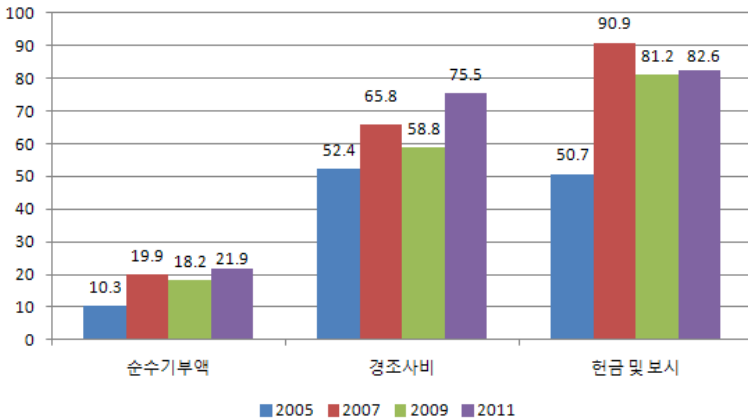


자료: 아름다운재단, 「기빙인덱스 조사요약」, 2012

순수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21만 9천원, 포괄적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114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순수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2009년 18만 2천원에서 2011년 21만 9천원으로 3만 7천원 증가하였으며, 국민 1인당 순수기부액은 2009년 9만 9천원에서 2011년 12만 4천원으로 2만 5천원 증가하였다.

[그림 II-4] 기부처별 기부액 변화 추이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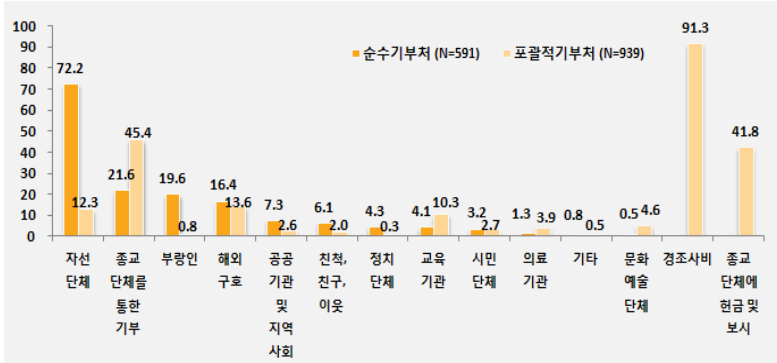


자료: 아름다운재단, 「기빙인덱스 조사요약」, 2012

기부처별 평균 기부액 변화 추이를 보면, 2009년에 비해 순수기부액의 경우 소폭 증가하였으며, 경조사비의 경우 16만 7천원 증가하였고, 현금 및 보시의 경우 200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5] 기부참여자의 기부처 순위

(단위: %)



자료: 아름다운재단, 「기빙인덱스 조사요약」, 2012

순수 기부 참여자의 기부처로 ‘자선 단체를 위한 기부’라는 응답이 72.2%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현금(21.6%)’,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부(19.6%)’,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16.4%)’,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7.3%)’,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6.1%)’,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기부(4.3%)’, ‘교육기관을 위한 기부(4.1%)’, ‘시민단체를 위한 기부(3.2%)’, ‘의료기관을 위한 기부(1.3%)’, ‘기타(0.8%)’, ‘문화 예술 단체를 위한 기부(0.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007, 2009, 2011년 3개년간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라는 응답은 2009년 24.8%에 비해 3.2%p 감소하였고 ‘부랑인을 위한 기부’라는 응답은 2009년보다 9.6%p 하락하였다.

Ⅲ. 비영리분야 통계 구축의 해외 사례

1. 일본

가. 국세통계연보

일본 국세청통계연보(國稅廳統計年報)에서는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국세청통계연보는 2012년 11월 기준 평성22년도(平成年度) 즉, 2010년도까지 제작되었으며, 일부 자료에 한해서는 2011년 자료가 게시되어있다.

일본의 국세청통계연보의 제2편은 직접국세(直接國稅, Direct National Tax)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부문은 신고소득세(申告所得稅)와 원천소득세(源泉所得稅), 법인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원천소득세 부분과 법인세 부문에서 비영리법인과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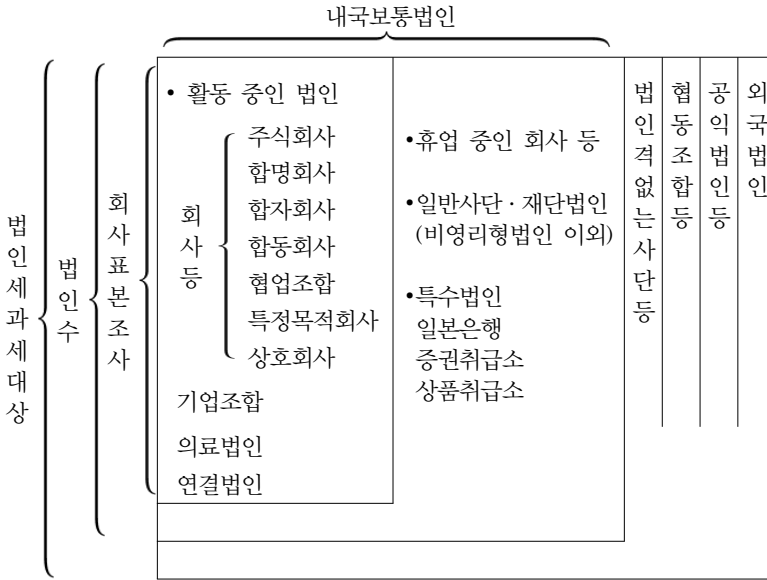
일본 2010년 국세청통계연보의 신고소득세(Self-assessment Income Tax) 현황은 2010년분 소득세 신고 납세자에 대해 표본 조사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2011년 3월 31일 현재 2010년분 소득세 신고 납세자(소득 금액이 있어도 각종 공제 결과, 신고 납세액이 없는 자는 포함하지 않음)이다. 조사방법은 전국 524개 세무서를 토대로 하며, 소득구분별·총소득계급별로 일정한 추출 비율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를 수행하였다.

원천소득세(Withholding Income tax)는 2010년분 원천소득세 과세상황 및 민간급여실태 통계조사 결과(발취)로 이루어져있다.

과세 여부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통해 조사·집계한 것이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원천소득세의 과세 전모를 파악한 것이다. 민간급여실태 통계조사는 급여소득자(민간기업에 속하는 사람에 한함)의 규모별, 업종별, 급여계급별로 인원, 급여, 세액을 밝힌 것이다. 이 조사는 표본조사 방법으로 조사,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과세 상황 관련 수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2010년 일본 국세청통계연보의 법인세 분야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사이에 종료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상황, 법인 수 및 회사 표본조사(발취)로 이루어져있으며, 매년 발행되고 있다. 법인세 과세 여부 및 법인 수는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집계했다. 회사 표본조사는 내국 보통 법인 중 활동 중인 회사 등(주식,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협업조합, 특정 목적 회사 등), 기업 조합, 상호회사, 의료법인의 법인 수 및 연결 법인의 법인 수, 사업 소득 금액, 잉여금 처분의 내용, 교제비 등의 항목에 대한 표본조사 방법으로 조사·집계한 것이다. 이상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으며, 이를 통해 공익법인의 법인세법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 일본 국세청통계연보 법인세분야 수록 대상



자료: 國稅廳, 『國稅廳統計年報』 平成22年度版

국세청통계연보에서 내국법인 중 공공법인(公共法人)은 일본 법인세법 별표 제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없으며, 지방 공공단체, 지방 도로공사, 일본 방송협회 등이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公益法人等)은 법인세법 별표 제2에 해당하는 법인등을 말한다. 공익법인 등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①공익재단법인, ②공익사단법인, ③비영리형법인에 해당하는 일반재단법인 또는 일반사단법인, ④사회복지법인, ⑤종교법인, ⑥학교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본다.

일본의 법인세율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보통 법인에 대해서는

30%의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공익법인 등에 관해서는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사단법인 등과 그 이외의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일반사단법인 등이란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및 비영리형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2단계 누진세가 적용되며, 연 800만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한해 〈표 III-1〉에서와 같이 18~30%의 세율이 과세된다.

〈표 Ⅲ-1〉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구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율										청산소득에 대한 세율	
	보통법인		협동조합 등		일반사단법인 등		공익법인 등		구분			
	기본세율	중소법인의 경감세율	연800만엔 초과 금액 이하 금액	연800만엔 초과 금액 이하 금액	연800만엔 초과 금액 이하 금액	연800만엔 초과 금액 이하 금액	연800만엔 초과 금액 이하 금액	연800만엔 초과 금액 이하 금액	1990. 4. 1~1998. 3. 31 사이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경우	1998. 4. 1~1999. 3. 31 사이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경우		
1990. 4.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7.5	28	27 (30)	27	27	27	22	22	22	1990. 4. 1~1998. 3. 31 사이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경우	33.0	24.8
1998. 4.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4.5	25	25 (30)	25	25	25	22	22	22	1998. 4. 1~1999. 3. 31 사이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경우	30.7	23.1
1999. 4.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0	22	22 (26)	22	22	22	22	22	22	1999. 4. 1 이후 해산 또는		
2008. 12.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0	22	22 (26)	30	22	22	22	22	22	1999. 4. 1~2001. 3. 31 사이에 합병한 경우	27.1	20.5
2009. 4. 1 이후 종료 사업연도	30	18	22 (26)	30	18	30	18	30	18	2010. 10. 1 이후 해산한 경우	폐지 (보통소득 과세)	

주: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율 중 일반 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의 경감 세율은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 또는 자본을 가지지 않는 법인의 소득금액 가운데 연 800만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러나 2010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자본금 5억엔 이상 대 법인 등 사이에 그 큰 법인 등에 의한 완전 지배관계가 있는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경감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협동조합 등의 ()안의 세율은 특정 협동조합 등의 소득 중 10억엔을 초과하는 분이다.
3. 일반사단법인 등은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자료: 國稅廳, 『國稅廳統計年報』, 각 연도

1) 공익법인의 법인세 과세 현황

법인세 부문에서는 법인을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연결법인으로 분류하고, 내국법인을 ①보통법인과 ②법인격 없는 사단 등과 ③협동조합 등, ④공익법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각각의 법인에 대해 법정사업연도분 세액, 법인 수, 신고법인 수, 소득금액 중 이익 금액, 소득금액 중 손실 금액 등을 기록함으로써 이를 통해 공익법인의 법인세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법인세액은 <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9조 2,343억엔으로 이 중 약 464억엔이 공익법인 등이 낸 세액이다. 2011년의 경우에는 총 9조 3,995억 3,700만엔으로 이 중 461억 8,900만엔이 공익법인 등이 낸 세금을 말한다.

〈표 III-2〉 일본 국세통계연보 법인세 과세 현황

(단위: 백만엔, 개)

구 분	법정사업연도분		청산확정분		세액 합계	법인 수 (신고법 인 수)
	소득 금액	세 액	소득 금액	세액		
평성22년도(2010년)	35,685,102	9,238,256	17,590	4,680	9,242,936	-
내국법인 중 공익법인 등(2010년)	214,570	46,431	-	-	46,431	46,665 (44,828)
평성22년도(2011년)	36,808,623	9,395,701	13,560	3,836	9,399,537	-
내국법인 중 공익법인 등(2011년)	210,065	46,189	-	-	46,189	47,585 (46,462)

- 주: 1. 조사대상: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사이에 종료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 2011년 7월 31일까지 신고가 있었던 일과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처리한 일을 '법인세 사무정리 표(신고서 및 결의서)'에 근거해 작성
2. 2007년도분 이상에서는 과거 사업연도(매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에 관한 신고로 매년 8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제출되었지만 중 제출 기한의 연장 등에 의한 기한 내 신고분을 현 사업연도분에 포함하고 있다.
3. 세액은 소득, 보유 및 토지 양도 이익에 대한 세액에서 소득 세액 외국 세액 등의 공제 금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한다.
4. '신고법인 수는 확정 신고가 있었던 사업연도 수를 법인 단위로 집계한 결과를 보여주며, 연결 신고를 한 법인은 해당 그룹을 하나로 집계하고 있다.

자료: 國稅廳, 『國稅廳統計年報』平成22年度版

2) 기부 세제 및 현황

2012년 일본의 개인에 대한 기부금 공제는 특정기부금의 금액과 총소득금액의 40% 중 적은 액수 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일본은 지진 관련 기부금에 관한 특별한 세제를 두고 있다. 이는 국가 또는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현저한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및 동일본 대지진 관련 기부금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재무장관이 지정한 기부금을 말한다. 이

금액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의 80%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일본의 기부금 세제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병행하고 있다. 공익사단법인 등 인정 NPO법인 등 또는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일정한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정당 등 기부금특별공제액의 특별공제액은 당해연도 소득세액의 25%를 한도로 하고, 공익사단법인 등 기부금 특별공제액·공익사단법인 등 기부금특별공제액·특정지진지정기부금 특별공제액의 합계액은 당해연도 소득세액의 25%를 한도로 한다.

〈표 Ⅲ-3〉 기부금 특별공제(세액공제)

① 정당 등 기부금 특별 공제	= (당해 지출한 정당 등에 대한 기부 금액의 합계액(소득금액의 40% 한도)-2천엔)×30%
② 인정 NPO법인 등 기부금 특별 공제액	= (당해 지출한 기부금 합계액(소득금액의 40% 한도)-2천엔)×40%
③ 공익사단법인 등 기부금 특별 공제액	= (당해 지출한 공익사단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합계액(소득금액의 40% 한도)-2천엔)×40%
④ 특정 지진 지정기부금 특별 공제액	= (당해 지출한 특정지진지정기부금 합계액 (소득금액의 40% 한도)-2천엔)×40%

자료: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koho/kurashi/pdf/11.pdf>

법인이 지불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되고, 그 외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사 등의 법인이 지출한 일반기부금은 그 법인의 자본금액, 소득금액에 따라 일정한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된다.

손금산입한도액 =

$$[\text{자본금액} \times (\text{당기의 달}/12) \times \frac{2.5}{1,000} + \text{소득금액} \times \frac{2.5}{100}] \times 0.25$$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다음 중 작은 금액이 손금에 산입된다.

- (1)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합계액
- (2) 특별 손금 산입 한도액

$$= [\text{자본금액} \times (\text{당기의 달}/12) \times \frac{3.75}{1,000} + \text{소득금액} \times \frac{6.25}{100}] \times 0.5$$

특정공익신탁의 신탁 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그 중 일정 요건을 충족(인정특정공익신탁)한 금액은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포함되며, 인정 NPO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지정기부금 제외)도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포함된다.

인정 NPO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중 (1)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 활동에 특히 필요한 비용 (2)동일본 대지진으로 감소 손실 또는 파손된 일정 건물 등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일본의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I-4>와 같다.

2010년 기준 신고소득세(Self-assessment Income Tax)의 기부금 소득공제인원은 22만 5,527명이며, 공제금액은 약 272억엔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국세청통계연보는 소득계급별 기부금 공제인원과 공제금액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득자별로 공제인원과 공제금액도 발표하고 있다(<표 III-5> 참조).

<표 III-6>과 <표 III-7>은 법인의 기부지출액 규모를 자본금규모별로 보여주고, 또 산업별로 기부금 총액을 나타내고 있다. 2010

년 기준 법인의 기부금 총규모는 약 6,957억엔이며, 사업별로 보면 운수·통신·공익사업의 기부금 규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6>, <표 III-7> 참조).

〈표 III-4〉 일본의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

	기부금 유형	공제 한도
개 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특정기부금으로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 = (기부금액(소득금액의 40% 한도) - 2천엔)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 지진관련기부금(소득공제) = (기부금액(소득금액의 80% 한도) - 2천엔)
	특정공익신탁에 대한 기부금	
	인정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 공익사단법인 등 인정 NPO법인 등 또는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일정한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정당 등 기부금 특별공제	
	일반기부금(상기 이외)	공제없음
법 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은 별도 기준으로 기부금액의 합계액과 특별손금산입한도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특정공익신탁에 대한 기부금	
	인정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특별손금산입한도액 = $\left[\frac{\text{자본금액} \times (\text{당기의 달}/12) \times 3.75}{1,000} + \text{소득금액} \times \frac{6.25}{100} \right] \times 0.5$
	정당 등 기부금 특별공제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일반기부금(상기 이외)	손금산입한도액 = $\left[\text{자본금액} \times (\text{당기의 달}/12) \times \frac{2.5}{1,000} + \text{소득금액} \times \frac{2.5}{100} \right] \times 0.25$

주: 상기 기부금공제(소득공제) 및 기부금 특별 공제(세액공제)의 산식에서의 2천엔은 기부금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세액공제)를 모두 합해서 2천엔임

자료: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koho/kurashi/pdf/11.pdf>

〈표 Ⅲ-5〉 신고소득세(Self-assessment Income Tax) 중 기부금 공제 현황(2010년)

(단위: 명, 백만엔)

구 분		기부금공제	
		인원	금액
합계소득 계급별	70만엔 이하	2,049	93
	100만엔 이하	3,988	107
	150만엔 이하	12,232	355
	200만엔 이하	18,851	580
	250만엔 이하	18,528	625
	300만엔 이하	12,213	477
	400만엔 이하	18,226	842
	500만엔 이하	14,757	787
	600만엔 이하	12,554	736
	700만엔 이하	10,798	712
	800만엔 이하	9,221	672
	1,000만엔 이하	14,537	1,177
	1,200만엔 이하	11,520	1,142
	1,500만엔 이하	14,419	1,672
	2,000만엔 이하	16,441	2,304
	3,000만엔 이하	15,390	3,031
	5,000만엔 이하	11,434	3,159
	1억엔 이하	6,086	3,203
	2억엔 이하	1,608	2,009
	5억엔 이하	489	1,150
	10억엔 이하	123	938
20억엔 이하	45	787	
50억엔 이하	14	363	
100억엔 이하	4	280	
100억엔 초과	-	-	
계		225,527	27,199
소득자별	사업소득자	30,861	4,806
	부동산소득자	39,765	4,887
	급여소득자	91,464	10,814
	잡소득자	56,029	2,487
	기타소득자	7,408	4,205

자료: 國稅廳, 『國稅廳統計年報』 平成22年度版

〈표 III-6〉 법인의 자본금계급별 기부지출액(2010년)

(단위: 백만엔)

구분	기부지출액
2005	503,158
2006	475,635
2007	478,539
2008	493,986
2009	546,712
2010	695,651
<hr/>	
〈자본금 계급별〉	
100만엔 미만	4,571
100만엔 이상	1,246
200만엔 이상	13,019
500만엔 이상	7,920
1,000만엔 이상	49,757
2,000만엔 이상	39,057
5,000만엔 이상	32,023
1억엔 이상	80,065
5억엔 이상	10,012
10억엔 이상	53,091
50억엔 이상	27,603
100억엔 이상	273,444
<hr/>	
〈재분류〉	
1억엔 이하	160,428
1억엔 초과	431,380
<hr/>	
연 결 법 인	103,842
<hr/>	
계	695,651

자료: 國稅廳, 『國稅廳統計年報』 平成22年度版

〈표 Ⅲ-7〉 법인의 사업별 기부지출액(2010년)

(단위: 백만원)

구분	기부지출액
〈업 종 별〉	
농임수산업	3,121
광업	3,407
건설업	25,090
섬유산업	1,495
화학공업	84,787
철강금속공업	20,050
기계공업	53,964
식음료제조업	44,518
출판인쇄업	7,381
기타제조업	17,445
도매업	41,278
소매업	25,337
요리식음여관업	4,913
금융보험업	45,999
부동산업	21,246
운수통신공익사업	109,843
서비스업	55,658
기타법인	26,276
기업조합	70
상호법인	4,018
의료법인	22,188
연결법인	103,842
계	695,651

자료: 國稅廳, 『國稅廳統計年報』 平成22年度版

나. NPO 백서(일본 국세청)

일본의 공익법인에 관한 자료로는 일본의 총무성에서 발간하는 공익법인백서가 있다.

공익법인 개황 조사(公益法人概況調査)는 공익법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총무성(내각 관방 관리실)이 각 소관 관청에 쇼와 61년(198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항목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 모든 조사 항목이 지속적으로 조사된 것은 아니다. 조사 시점은 매년 10월 1일로 이 연례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헤이세이 19년도(2007년) 공익법인 현황 조사(헤이세이 19년 10월 1일 현재, 즉 2007년 10월 1일)에 의해 각 소관 관청으로부터 신고받은 현황을 기록한 것이다.⁷²⁾

가장 최근 보고서는平成20년도로 공익법인에 관한 신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일본의 총무성에서 정리하는 연차보고는 이 보고서가 가장 마지막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 일본의 공익법인은, 민법에 근거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는 민간비영리법인이며, 2007년 19년 10월 1일 약 25,000개의 법인이 존재한다. 공익법인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공익법인의 현황 및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공익법인의 현황
- 제2장 공익법인 제도의 개요
- 제3장 공익법인과 행정의 관계와 그 개혁
- 제4장 공익신탁 제도

72) 일본 총무성, http://www.soumu.go.jp/menu_seisaku/hakusyo/koueki/2008_honbun.html

제1장 공익법인의 현황은 기본사항과 개별 사항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다. 기본사항에서는 공익법인 수와 공익법인 수의 추이, 신설 및 해산 법인 수 등을 서술함으로써 일본 내의 공익법인의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2절은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 사항 분석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공익법인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일본 내 공익법인의 수는平成 19년 10월 1일(2007년 10월 1일) 기준 총 24,648개의 법인이 존재하며, 전체의 법인은 12,530개의 사단법인과 12,118개의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의 내용이나 활동의 범위에 따라 각 소관관청의 감독을 받고 있다.

공익법인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연간수입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회비 수입(민법상의 사원 및 찬조 회원 등으로부터 회비 수입을 가리킴)
- 재산 운용 수입(기본 재산·운용 재산의 구분에 관계없이 재산의 운용에서 얻은 소득을 말함)
- 기부·보조금 등의 수입(기부금, 보조금, 조성금 등의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않는 성질의 수입을 말하며, 출자원은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의 어느 것이어도 좋음)
- 사업 수입(사업 활동을 행한 결과로 얻은 수입을 말함)
 -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정관 또는 기부행위 목적 사업인 사업(지도 감독의 공익사업) 외에도 공익 활동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지도 감독의 수익 사업) 등으로 되어 있음
 - 위의 이 연간수입에 전년도 조월금(繰越金, 전기 이월 수지

차액)을 더한 것이 당해연도의 총수입이 됨

- 또한, 연간 지출에 다음 연도에 조월금(차기 이월 수지 차액)을 더한 것이 당해연도의 총지출액이며, '총수입 = 총지출 금액'의 관계가 있음

이밖에 공익법인 백서는 공익법인의 연간 수입액을 규모에 따라 법인을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2007년 백서에 따르면 연간 수입액의 합계는 18조 2,478억엔이며, 한 기업당 평균 연간수입액은 7억 4,033만엔, 중앙값은 5,801만엔으로 평균과 중앙값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규모별로 보면, 1천만엔 이상 5천만엔 미만의 법인이 6,436개(2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억엔 이상 5억엔 미만이 6,016개(24.4%), 1천만엔 미만은 5,235개(21.2%)로 구성된다. 수입이 작은 규모의 법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즉, 평균을 초과하는 10억엔 이상의 법인은 2,373개(9.6%)에 불과해 매우 수입액이 큰 법인 때문에 평균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연간수입의 구성을 보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모두 사업 수입이 연간수입의 약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불문하고 기부금 및 정부와 민간조성단체 등의 보조금 등도 받고 있지만, 이러한 합계액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모두 약 8%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제3장 공익법인과 행정의 관계와 그 개혁의 제2절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보조금·위탁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절은 국가 소관의 공익법인에 대한 보조금·위탁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투명화·합리화의 실시 사항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006년 결산 기준 국가 소관의 공익법인에 대한 각 부처의 보조금·위탁비 등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보조금·

위탁비 등은 예산에서 모든 교부 대상 교부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집행단계에서 교부대상을 결정하여 공익법인에게 교부하는 것 등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2006년 결산 기준으로 국가 소관의 공익법인에 대한 각 부처의 보조금·위탁비 등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각 부처로부터 보조금 등(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보급금 등을 말함)의 교부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은 476개이고, 국가소관 공익법인의 7.1%에 해당된다. 또한 이들 법인에 대한 보조금 등의 교부 총액은 2,504억엔이며, 이는 2005년과 비교하면 63억엔(2.4%) 감소한 결과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보조금 등의 교부상황에 대해 법인의 소관부처별로 보면, 보조금 등의 교부를 받고 있는 소관법인 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문부과학성으로 117개이며 다음으로 후생노동성(116법인), 농림수산성(99법인)이다. 한편, 소관법인이 교부받은 보조금 등의 금액의 합계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제산업성(783억엔)이고, 그 다음으로 후생노동성(612억엔), 농림수산성(468억엔)이다. 그리고 교부금액별 법인 수는 10억엔 이상의 보조금 등의 교부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이 48개이며, 교부액이 1,000만엔 미만인 법인은 126개이다.

〈표 Ⅲ-8〉 각 부처에서 국가 소관 공익 법인에 대한 보조금·위탁비 등의 상황

(단위: 백만엔, 개, %)

	교부액	교부 법인 수	금액별 법인 수			
			1,000만엔 미만	1,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	1억엔 이상 10억엔 미만	10억엔 이상
보조금 등 (비율)	250,423	476	126 (26.5)	173 (36.3)	129 (27.1)	48 (10.1)
위탁비 (비율)	101,978	667	219 (32.8)	285 (42.7)	142 (21.3)	21 (3.1)
합계 (비율)	352,400	963	292 (30.3)	358 (37.2)	240 (24.9)	73 (7.6)

- 주: 1. 교부액수 및 교부 법인 수는 공관에 의한 중복을 제외한 실수이다.
 2. 본 자료에 있어서의 보조금 등이란,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보급금 등이다.
 3. 교부액수는 백만엔 미만을 반올림하기 때문에 보조금 등과 위탁비의 화는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4. 2006년도 결산 기준

자료: 일본 총무성, 『공익법인에 관한 연차보고서』, 평성20년(2008년)

각 부처에서 위탁비의 교부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은 667개 법인이 있고, 국가소관 공익법인의 9.9%가 각 부처에서 위탁비를 교부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 법인에 대한 교부액은 1,020억 엔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2005년도와 비교하면 190억엔(15.7%)이 감소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위탁비의 교부상황을 법인의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면, 위탁비를 교부받은 소관 법인 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후생노동성(223법인)이며, 경제산업성(172법인), 문부과학성(111법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관 법인이 교부를 받고 있는 위탁비용의 합계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제산업부(391억엔)이고,

다음으로 후생노동성(274억엔), 문부과학성(189억엔)의 순서로 나타난다. 또한 위탁금액별 법인 수는 위탁금액이 10억엔 이상의 공익법인은 21개, 교부액이 1,000만엔 미만인 법인은 219개이다.

투명화·합리화 규칙의 실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투명화·합리화 규칙의 실시 계획에서는 제3자분배정보조금 등(국가에서 교부된 보조금·위탁비 중 교부 대상 공익법인에서 해당 보조금·위탁비 등의 50% 이상을 다른 법인 등 제3자에게 분배·교부하는 것) 및 보조금 의존형 공익법인(국가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위탁비 등이 연간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공익법인)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위탁비 등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투명화·합리화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보조금·위탁비 등의 교부 등에 관한 투명화·합리화 규칙은 크게 ①제3자 분배정보조금 등 및 보조금의존형공익법인에 관한 조치, ②공익법인을 위한 보조금·위탁비 등 일반에 대한 조치 두가지로 나뉜다.⁷³⁾

다. NPO 백서(오사카 대학)

일본의 비영리공익법인에 관한 현황은 오사카 대학·대학원 국제 공공정책 대학원(OSIPP) 내 연구센터 중 하나인 Nonprofit Research & Information 센터에서 발행하는 『NPO 백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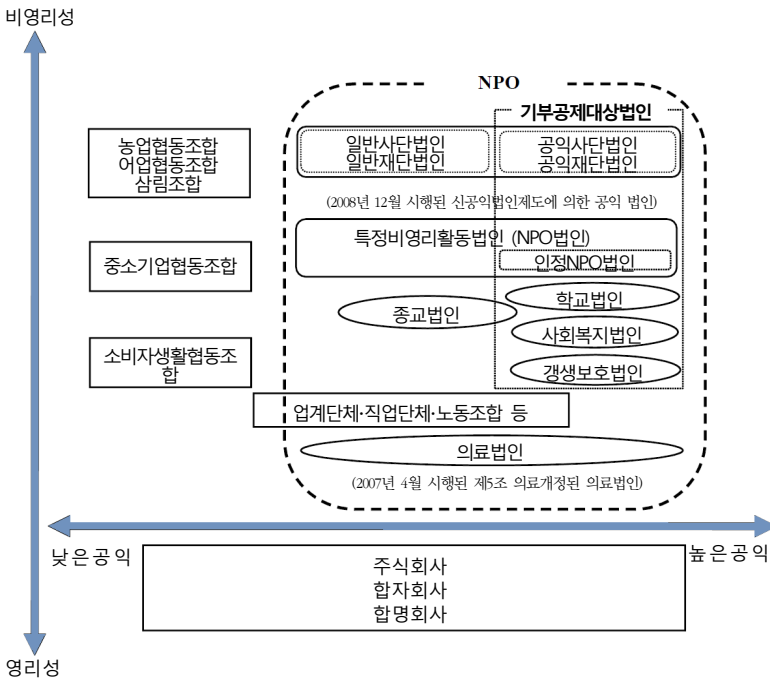
오사카 대학·대학원 국제 공공정책 대학원(OSIPP)은 NPO·NGO 등 민간 비영리 분야의 연구·교육을 심도 있게 수행하기 위해 2002년 4월 NPO 연구정보센터를 설립하고, 대학원 수준의 NPO

73) 일본 총무성, 『공익법인에 관한 연차보고서』, 평성20년(2008년)

과정의 기획·운영, NPO 교육용 텍스트의 개발, NPO 관계 도서 및 통계 정비·수집 및 국제 연구 교류를 실시하였다. 이 센터는 『NPO 백서』를 발행하고 있다.⁷⁴⁾

『NPO 백서』는 3년을 주기로 발행되며, 현재 2004년, 2007년, 2010년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비영리법인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Ⅲ-2] 일본의 비영리법인



자료: 오사카대학·대학원 국제 공공정책 연구과 NPO 연구정보센터, 『NPO 백서 2010』, 2010

74) OSIPP Center for Nonprofit Research & Information 홈페이지, www.osipp.osaka-u.ac.jp

『NPO 백서』는 일본의 NPO 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신공익법인 제도·NPO 세제와 기부금 세제·CSR·고용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일본에서 민간비영리 활동이 주목받게 된 것은 최근 20년 정도의 일로 1995년 완신·협로대지진에서의 자원봉사나 풀뿌리 활동 단체의 활약,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하 NPO법인)의 급증, 인구 고령화, 규제완화 등 장기적인 사회의 변화에 기인한다.

[그림 III-2]의 상단에 위치한 신공익법인제도에 의한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종래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할 관청의 재량에 의한 부분이 큰 것으로 알려져 그 공익성의 인증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공익법인 제도에 대한 개혁이 시행되어 현재는 사업의 공익성 여부와 상관없이 등기만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일반 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과 공익목적사업을 실시하는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오사카 대학의 『NPO 백서』는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부에서 NPO의 정의를 확인하고, 자원봉사, 신공익법인제도를 포함한 법제·세제, 고용 및 경영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후반에서는 NPO를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통계는 일본 비영리법인별 단체 수 및 지출 규모, 고용자 보수 등이며, 자료의 내용이 연도별로 동일하지 않아 연속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항목이 많다. 따라서 일본 오사카 대학의 『NPO 백서』는 축적 된 자료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NPO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비영리부문의 규모

우선, 각종 법인 단체 수를 보면 종교법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노동단체가 뒤를 잇는다. 2010년 기준 총비영

리법인의 수는 374,811개로 2006년 304,716개보다 약 18.7%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9〉 일본 비영리법인 형태별 단체 수

(단위: 개)

법인형태	법인 수	통계년	출처
특별민법법인	24,317	2008.12.01	내각부대신관방공익법인행정담당실 (2009)
일반사단법인·재단법인	1648	2009.09.30	NPO法人シーズ:시민활동지원제도 만드는 모임(website)
공익사단법인·재단법인	49	2009.09.30	공익법인데이터베이스(website)
사회복지법인	18,688	2008.04.01	재무부(website (b))
종교법인	182,709	2007.12.31	문화청(website)
학교법인	1,339	2008.04.01	재무부(website (b))
의료법인	45,901	2009.03.31	후생노동성(website (c))
갱생보호법인	163	2008.04.01	재무부(website (b))
NPO법인	38,997	2009.12.31	내각부대신관방시민활동추진과(website)
노동단체	61,000	2005~2007	辻中(2009)

자료: 오사카 대학·대학원 국제 공공정책 연구과 NPO 연구정보센터, 『NPO 백서 2010』, 2010

〈표 Ⅲ-10〉 일본 비영리법인 형태별 단체 수(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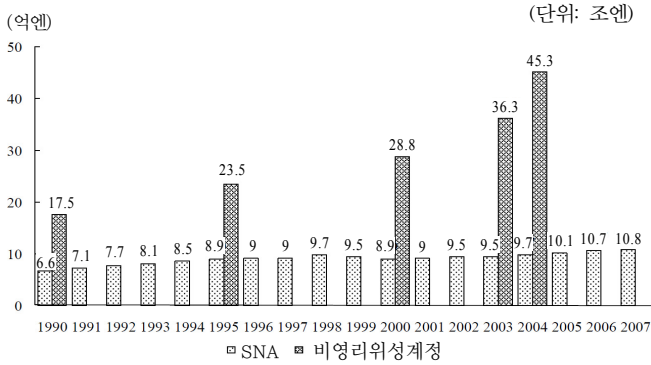
(단위: 개)

법인형태	법인 수
공익법인	25,263
사회복지법인	18,811
종교법인	182,641
학교법인	7,874
의료법인	40,030
갱생보호법인	163
특정비영리활동법인	29,934
계	304,716

자료: 오사카 대학·대학원 국제 공공정책 연구과 NPO 연구정보센터, 『NPO 백서 2007』,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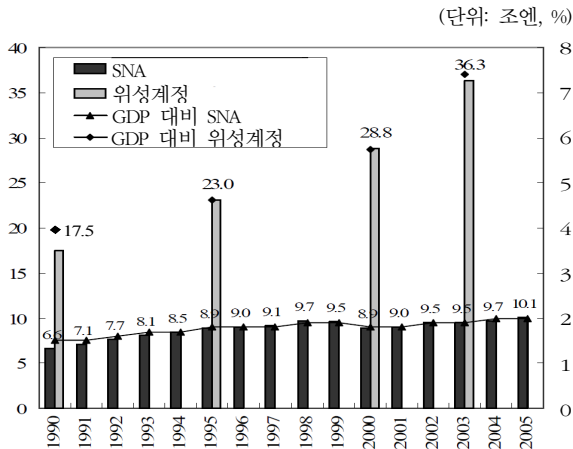
[그림 III-3], [그림 III-4]는 일본 비영리법인의 경제규모를 시계열로 보여주고 있으며, 비영리위성계정과 SNA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II-3] 일본 비영리법인의 경제규모



자료: 오사카 대학·대학원 국제 공공정책 연구과 NPO 연구정보센터, 『NPO 백서 2010』, 2010

[그림 III-4] 일본 비영리법인의 경제규모



자료: 오사카 대학·대학원 국제 공공정책 연구과 NPO 연구정보센터, 『NPO 백서 2007』, 2007

다음은 일본 비영리법인의 지출 규모를 나타내며, 의료법인의 지출 규모가 가장 크고, 노동단체의 지출규모가 가장 작아 의료법인의 6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Ⅲ-11〉 일본 비영리법인별 지출(2004년)

(단위: 십억엔)

법인형태	지출
공익법인	20,338
사회복지법인	18,300
종교법인	3,651
노동단체	540
업계단체	6,877
의료법인	33,940
학교법인	10,876
NPO법인	738
임의단체	1,811
계	97,071

자료: 오사카 대학·대학원 국제 공공정책 연구과 NPO 연구정보센터, 『NPO 백서 2010』, 2010

고용자 보수가 가장 적은 것은 임의단체로 400억엔에 불과하며, 그 다음이 NPO법인으로 1,120억엔으로 나타난다.

〈표 Ⅲ-12〉 일본 비영리법인별 고용자 보수(2004년)

(단위: 십억엔)

법인형태	지출
공익법인	3,679
사회복지법인	3,597
종교법인	655
노동단체	119
업계단체	935
의료법인	8,880
학교법인	3,301
NPO법인	112
임의단체	40
계	21,318

자료: 오사카 대학·대학원 국제 공공정책 연구과 NPO 연구정보센터, 『NPO 백서 2010』,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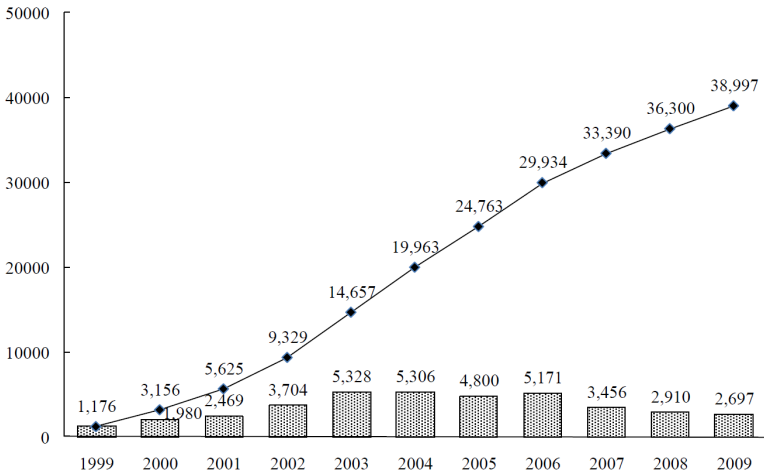
2) NPO법인의 활동 실태

NPO법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비영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년 말 기준 NPO법인의 누계 인증 수는 내각부 인증법인과 도도부현의 인증법인을 모두 포함하여 38,997개 단체에 이른다. 그 중 3,092개의 단체가 내각부의 인증을 받고 있다.

NPO법인의 추이를 보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07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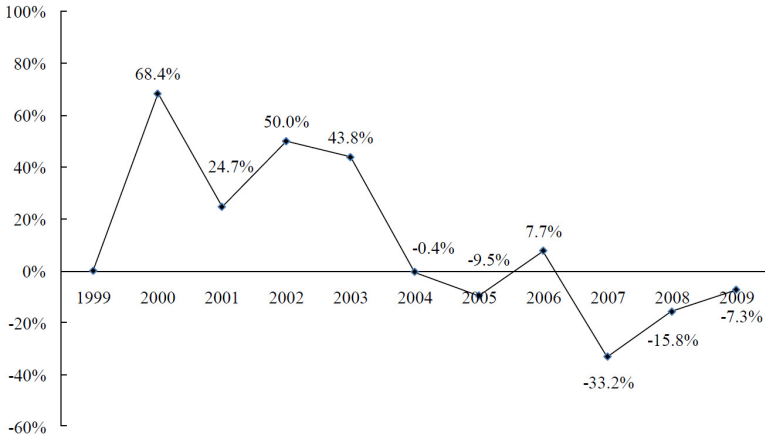
[그림 III-5] 일본 NPO법인 단체 수 추이

(단위: 개)



자료: 오사카 대학·대학원 국제 공공정책 연구과 NPO 연구정보센터, 『NPO 백서 2010』,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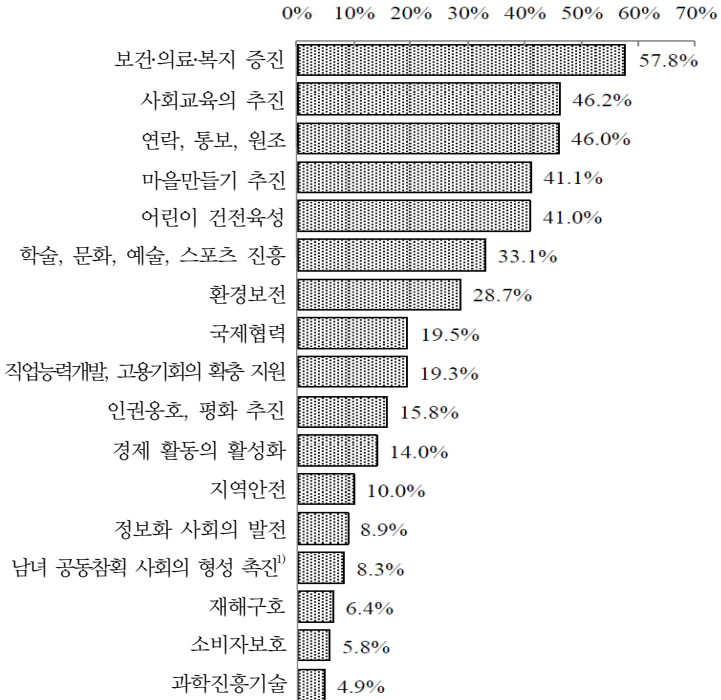
[그림 III-6] 전년 대비 NPO법인 연간 인증 비율



자료: 오사카 대학·대학원 국제 공공정책 연구과 NPO 연구정보센터, 『NPO 백서 2010』, 2010

NPO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 내용을 보면, [그림 III-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본의 비영리법인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보건·의료·복지 증진이 제일 많아 법인 수는 22,524개로, 전체의 57.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사회교육의 추진이 46.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원조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도 46.0%에 이른다. 여기서의 활동 내용이란 해당 NPO법인이 정관으로 내걸고 있는 활동을 말하며, NPO법인이 복수의 활동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전체의 총합이 100%가 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I-7] 일본 NPO법인의 활동분야(정관 기재 기준)



주: 1) 男女共同参画社会の形成促進

자료: 오사카 대학·대학원 국제 공공정책 연구과 NPO 연구정보센터, 『NPO 백서 2010』, 2010

라. Giving Japan

2010년 일본의 연간 개인기부자가 기부한 기부액은 총 5,455억 엔에 이른다. 이는 2010년 12월 14일 환율 기준 약 64억 8,781만 달러이다.

전체 기부자는 3,776만명으로 이는 일본의 15세 이상 성인인구의 34%에 이른다. 회비(Membership fee)를 통한 지출은 3,755억엔으로 이를 합하면 총 9,210억엔으로 나타난다.

〈표 III-13〉 일본의 기부 규모

(단위: 십억엔)

		총기부액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2009)		119.3
Satellite Account of Nonprofit Institutions (2007)		259.3
Nonprofit Almanac 2010 (2006)		277.5
Giving Japan 2010	기부(Donation)	545.5
	% of nominal GDP	0.11%
	회비(Membership fee)	375.5
	기부+회비	921.0

자료: Giving Japan 2010

미국은 GDP의 1.60%를 기부하고, 영국은 GDP 대비 0.68%를 기부하는 반면, 일본의 연간 기부액은 명목GDP의 0.12%에 불과하여 영국과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4〉 명목GDP 대비 기부액 비율

(단위: %)

	총개인기부액	명목GDP 대비 기부액
일본(2009)	5,455억엔	0.11
미국(2009)	2,274억달러	1.60
영국(2007)	99억유로	0.68

자료: Giving Japan 2010

일본의 분야별 기부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개인이 종교단체(religious organizations)에 기부하는 금액은 연간 2,409억엔으로 전체 기부액의 44.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 금액에는 감사헌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종교단체에 대한 자발적인 현금 기부만 포함되어 있다.

종교단체의 뒤를 이어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이 12.1%, 국가 및 지방정부(National, prefectural and local government)가 9.6%, 교육 및 연구가 7.8%, 긴급구호 및 재난구호가 4.3%를 차지한다. 교육 및 연구에는 사친회(parents teacher association)와 동창회(alumni associations)가 포함되어 있어 과다계상될 가능성이 있다.

〈표 III-15〉 일본의 분야별 기부 규모

(단위: 십억엔)

	Donation	Membership	Donation + Membership
국가 및 지방정부 (National, prefectural and local government)	52.4	NA	52.4
정치	5.8	17.0	22.8
종교활동	240.9	130.0	370.9
공동 모금(Community Chest)	18.8	NA	18.8
일본 적십자사(Japan Red Cross)	8.8	9.5	18.3
근린단체(Neighborhood association)	12.8	37.2	50.1
지역발전 및 경기부양(Revitalization)	4.8	8.5	13.6
긴급구호 및 재난구호	23.2	8.8	32.1
국제협력	66.2	26.7	93.2
예술, 문화 및 스포츠	5.3	7.2	12.7
교육 및 연구	42.5	66.4	109.6
환경보호 및 지원	0.6	0.4	1.0
보건, 의료, 복지	10.9	4.2	15.4
청소년 보호(Youth development)	11.0	12.5	23.6
지역환경의 보호	7.0	12.9	20.2
인권 보호	1.6	1.0	2.7
사업 및 전문가협회와 노동조합(Busines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and labor unions)	5.7	5.8	11.9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중개 스포츠(Intermediary sports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14.3	18.7	33.0
기타	13.0	8.7	21.9
총계	545.5	375.5	921.0

자료: Giving Japan 2010

2. 미국

가. NCCS

1) 소개

미국의 경우 비영리 분야의 통계를 구축하는 기관에서 비영리분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비영리분야 관련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NCCS(The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⁷⁵⁾는 미국의 비영리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관으로 NCCS의 조사영역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 및 비영리영역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데이터 및 정보를 발전시키는 활동을 수행한다. NCCS는 연구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비영리조직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2) DATA

NCCS는 미국 내 비영리조직 및 기부 활동에 대한 국가와 주 정부 차원의 보고서에 광범위하게 접근하며, 조직 유형 및 주(state), 연도 및 그밖에 다른 분류에 의해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다.

미국세법은 §501(c)에서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면세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국세청으로부터 §501(c)(3)의 단체로 인정되면 연방소득세 면세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의 기부금을 자선기부금으로 인정한다.

§501(c)(3)에 해당하는 면세단체는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점검,

75) <http://nccs.urban.org/>

문학, 교육, 국내 또는 국제아마추어 스포츠 진흥 그리고 아동 및 동물의 학대 방지를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공동모금(community chest), 기금(fund) 또는 재단(foundation)으로서, 그 순수익이 사적 주주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며 그 주된 활동으로 정치적 선전이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활동 및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로 정의하고, 면세단체의 유형에서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은 제외한다.⁷⁶⁾

NCCS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기 위한 상세한 신고 양식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 구조에 대해 설명해놓아 비영리조직 및 기부활동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 개요

약 230만개의 비영리단체가 미국에서 활동하며, 2010년 기준 약 160만개 비영리단체가 국세청(IRS)에 등록되었다. 이는 2000년과 비교하여 24% 증가한 수치이다. 비영리부문은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5%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경제에 8,048억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는 비영리부문의 가장 큰 구성 요소를 차지하며, <표 II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기준 매출 1조 5,100억달러를 달성하였고, 지출 1조 4,500억달러, 그리고 자산 2조 7,10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76) 오영호·손원익·황준성·전광현·양재모·윤강재,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1

〈표 III-16〉 미국 비영리단체의 규모와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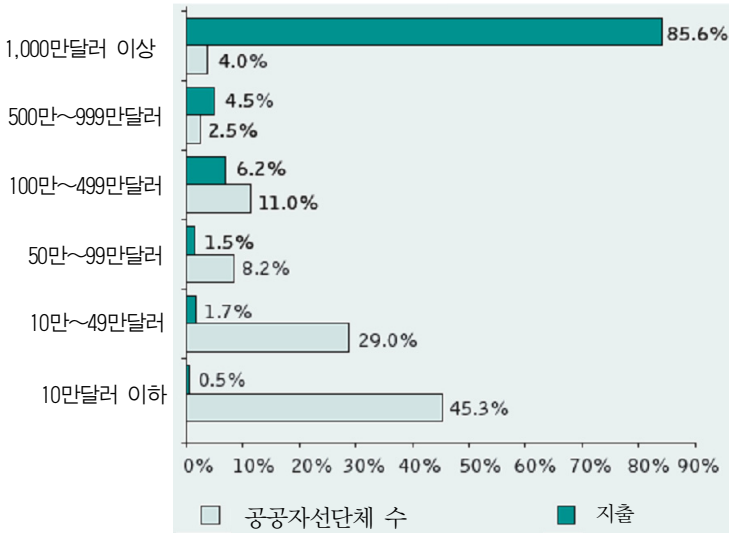
(단위: 개, 십억달러, %)

	2000	2005	2010	2000~2010 변화율	2000~2010 변화율 (물가상승률 반영)
등록 비영리단체 수	1,260,000	1,410,000	1,560,000	23.6	-
신고 비영리단체 수	444,161	552,569	618,062	39.2	-
수 입	1,150	1,630	2,060	78.3	40.8
지 출	1,010	1,480	1,940	91.8	51.5
자 산	2,570	3,500	4,490	74.8	38.1
공공자선단체 수, 501(c)(3)	688,600	847,954	979,901	42.3	-
신고 공공자선단체 수	249,859	313,164	366,086	46.5	-
수 입	837	1,170	1,510	80.9	42.9
지 출	750	1,080	1,450	94.0	53.2
자 산	1,500	2,070	2,710	80.6	42.6

자료: Amy S. Blackwood, Katie L. Roeger, and Sarah L. Pettijohn,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 URBAN INSTITUTE, 2012

[그림 III-9]은 2010년 기준 공공자선단체 수와 비용규모별 비중을 나타낸다. 전체 자선단체의 45.3%가 10만달러 이하를 지출하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의 비중은 0.5%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00만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공공자선단체의 수는 전체에서 4%에 불과하지만, 비용의 비중은 85.6%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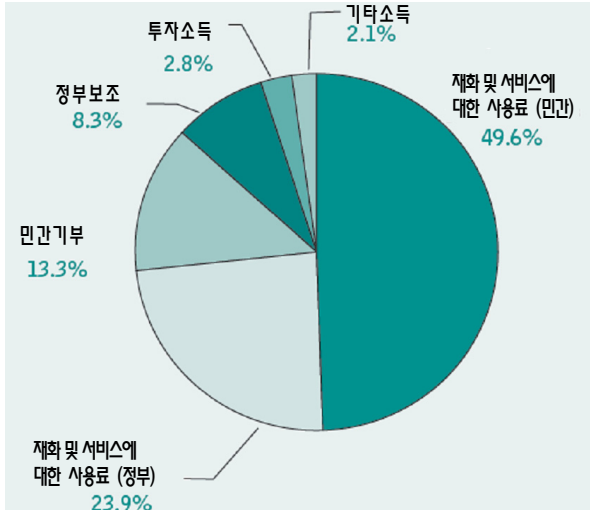
[그림 III-8] 미국의 공공자선단체 규모와 지출(2010년)



자료: Amy S. Blackwood, Katie L. Roeger, and Sarah L. Pettijohn,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 URBAN INSTITUTE, 2012

공공자선단체의 재원을 보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로 민간에서 전체의 49.6%, 정부에서 전체의 23.9%에 해당하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민간 기부로 전체의 13.3%를 차지한다.

[그림 III-9] 공공자선단체의 자원 분포(2010년)



자료: Amy S. Blackwood, Katie L. Roeger, and Sarah L. Pettijohn,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 URBAN INSTITUTE, 2012.

〈표 III-17〉은 2010년 기준 공공자선단체의 분야별 분포와 수입 규모, 지출규모, 자산규모 등을 나타내고 있다. 단체의 수를 기준으로 휴먼 서비스(Human Services)가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입, 비용 등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의료(Health)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7〉 2010년 기준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 분야별 수와 재정

(단위: 개, 십억달러, %)

	단체 수		수입		지출		자산	
전체	366,086	100.0	1,514.2	100.0	1,54.8	100.0	2,708.9	100.0
문화·예술·인문	39,536	10.8	29.3	1.9	27.8	1.9	98.9	3.7
교육	66,769	18.2	248.0	16.4	241.6	16.6	806.4	29.8
고등교육	2,129	0.6	159.3	10.5	155.7	10.7	505.6	18.7
기 타	64,640	17.2	88.7	5.9	85.9	5.9	300.8	11.1
환경과 동물	16,383	4.5	13.7	0.9	12.9	0.9	35.2	1.3
의료	44,128	12.1	907.7	60.0	869.9	59.8	1,141.8	42.2
병원 및 1차의료	7,647	2.1	773.4	51.1	740.9	80.9	926.9	34.2
기타건강관리	36,471	10.0	134.3	8.9	129.0	8.9	214.9	7.9
휴먼서비스	124,230	34.0	196.4	13.0	189.9	13.1	297.3	11.0
국제 및 외교 관련	7,533	2.1	31.4	2.1	29.7	2.0	31.9	1.2
공공 및 사회적 혜택	43,875	12.0	74.4	4.9	70.8	4.9	268.1	9.9
종교관련	23,502	6.4	13.0	0.9	12.2	0.8	29.2	1.1

자료: Amy S. Blackwood, Katie L. Roeger, and Sarah L. Pettijohn,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 URBAN INSTITUT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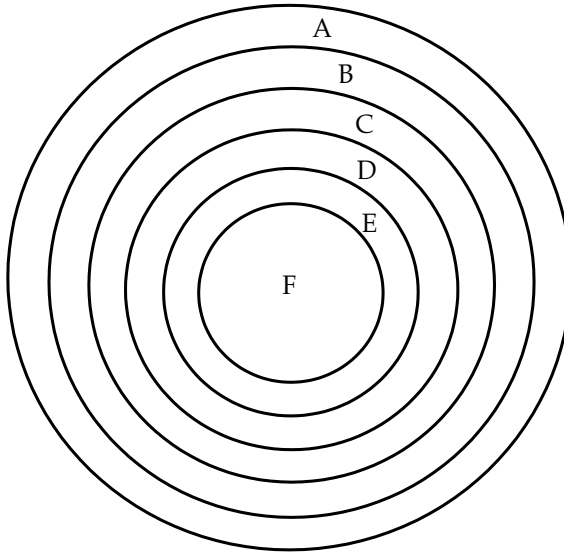
나) 비영리단체 현황

(1) 비영리단체의 수

〈표 III-18〉은 1999년과 2009년의 미국 비영리조직의 수를 나타낸다. NCSS는 미국 IRS로부터 자료를 받아 해당 자료를 민간에 공개한다. 1999년의 미국 비영리조직은 1,202,573개였으나 2009년에는 1,581,111개로 증가하였다. 이 중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가 2009년 기준 1,006,670개로 63.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III-10]은 미국의 비영리기관을 과세상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여 포함관계를 보여준다. A는 미국의 모든 사회기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단체는 정부기관, 영리기관, 비영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B는 비영리기관을 의미하고 C는 모든 면세기관을 의미한다. D는 사회복지적 면세기관, E는 면세 가능한 기부금 대상 면세기관, F는 면세 가능한 기부금을 모을 수 있으나 입법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의 정치적 선전활동이 금지되는 면세기관(면세자선기관)이다.⁷⁷⁾

[그림 III-10] 미국의 비영리법인 분류



자료: 손원익,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77) 손원익,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표 III-18〉 미국 비영리조직의 규모 비교(1999, 2009년)

(단위: 개, %)

	1999		2009		증가율
	조직 수	비중	조직 수	비중	
All Nonprofit Organizations	1,202,573	100.0	1,581,111	100.0	31.5
501(c)(3) Public Charities	631,902	52.5	1,006,670	63.7	59.3
501(c)(3) Private Foundations	77,978	6.5	120,617	7.6	54.7
Other 501(c) Nonprofit Organizations	492,693	41.0	453,824	28.7	-7.9
Small community groups and partnerships, etc.	Unknown	NA	Unknown	NA	NA
501(c)(3) Public Charities	631,902	52.5	1,006,670	63.7	59.3
501(c)(3) Public Charities Registered with the IRS (including registered congregations)	631,902	52.5	1,006,670	63.7	59.3
Reporting Public Charities	246,733	20.5	315,662	20.0	27.9
Operating Public Charities	214,344	17.8	275,984	17.5	28.8
Supporting Public Charities	32,389	2.7	39,678	2.5	22.5
Non-Reporting, or with less than \$25,000 in Gross Receipts	385,169	32.0	691,008	43.7	79.4
Congregations (about half are registered with IRS) ¹⁾	-	0.0	385,874	24.4	NA
501(c)(3) Private Foundations	77,978	6.5	120,617	7.6	54.7
Private Grantmaking (Non-Operating) Foundations	74,891	6.2	115,249	7.3	53.9
Private Operating Foundations	3,087	0.3	5,368	0.3	73.9
Other 501(c) Nonprofit Organizations	492,693	41.0	453,824	28.7	-7.9
Civic leagues, social welfare orgs, etc.	124,774	10.4	111,849	7.1	-10.4
Fraternal beneficiary societies	103,725	8.6	77,811	4.9	-25.0
Business leagues, chambers of commerce, etc.	70,718	5.9	72,801	4.6	2.9
Labor, agricultural, horticultural orgs	60,530	5.0	56,292	3.6	-7.0
Social and recreational clubs	56,429	4.7	57,255	3.6	1.5
Post or organization of war veterans	34,608	2.9	34,593	2.2	-0.0
All Other Nonprofit Organizations	41,909	3.5	43,223	2.7	3.1

주: 1) 교회의 수는 미국 교회목록(<http://list.infousa.com/acl.htm>), 2004년 웹사이트에서 참고하였으며 교회의 약 절반이 등록된 공공자선단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에서 제외함

자료: IRS Business Master File 01/2010, NCCS 홈페이지 재인용

IRC §501(c)(3)의 단체는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와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으로 구분되며, 이는 단체의 활동에 있어 공적관여(public involvement) 수준에 의해 구분된다. 공공자선단체는 일반적으로 공공 및 정부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공적영역과 상당한 상호작용을 한다. 공공자선단체는 해당 자격을 갖추고 공공자선단체로 요청하지 않으면 민간재단으로 간주된다. 공공자선단체에는 ①교회 또는 교회관련 조직, ②병원, 의료연구 조직, ③학교,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 등과 같은 교육시설, ④주 또는 자치 도시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을 위한 자산관리 기관 ⑤미국 정부 관련 기관, ⑥공공으로부터 지원받는 조직 등이 해당한다.⁷⁸⁾

이들 단체 중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Publication 78을 확인해야한다.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I-19>와 같으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단체는 종교 관련 단체로 총 222,145개이지만, 이 중 IRS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단체는 2,266개에 불과하다.

78) 오영호·손원익·황준성·전광현·양재모·윤강재,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1

〈표 III-19〉 미국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의 규모(2010년)

(단위: 개, 달러)

NIEE Code	Description	수	IRS 등록 수	Total Revenue	Total Assets
A	Arts, Culture, and Humanities	102,146	63,218	26,410,348,436	92,385,313,112
B	Education	157,334	95,437	221,015,693,280	753,103,973,877
C	Environmental Quality, Protection, and Beautification	29,449	13,717	7,394,708,328	20,675,797,399
D	Animal-Related	17,985	11,148	5,324,597,375	12,438,783,543
E	Health	38,512	28,140	780,990,289,855	962,353,757,480
F	Mental Health, Crisis Intervention	16,945	10,896	27,839,878,800	21,684,628,324
G	Diseases, Disorders, Medical Disciplines	22,051	12,519	14,187,041,916	19,778,940,578
H	Medical Research	3,833	2,638	7,103,673,493	31,629,197,202
I	Crime, Legal Related	14,480	8,563	6,702,465,444	6,275,740,511
J	Employment, Job Related	7,580	4,845	13,193,337,057	10,770,186,760
K	Food, Agriculture, and Nutrition	7,522	4,860	7,169,720,123	4,176,072,092
L	Housing, Shelter	27,338	19,442	20,506,425,236	68,459,324,038
M	Public Safety	14,389	8,237	1,933,300,616	4,773,684,669
N	Recreation, Sports, Leisure, Athletics	89,644	51,612	10,962,554,669	15,622,792,831
O	Youth Development	22,196	12,089	6,185,164,306	12,335,874,989
P	Human Services - Multipurpose and Other	88,605	54,184	114,023,472,533	151,575,579,930
Q	International,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15,687	9,489	27,967,966,261	27,864,064,617
R	Civil Rights, Social Action, Advocacy	6,105	3,192	2,065,851,445	2,616,668,451

〈표 III-10〉 미국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의 규모(2010년)(계속)

NTEE Code	Description	수	IRS 등록 수	Total Revenue	Total Assets
S	Community Improvement, Capacity Building	46,777	25,500	14,692,809,634	40,123,348,420
T	Philanthropy, Voluntarism, and Grantmaking Foundations	30,049	19,585	20,344,651,338	113,818,629,977
U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Services	6,356	3,754	17,221,860,648	18,001,782,922
V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s, Services	2,412	1,179	2,214,153,679	3,791,788,032
W	Public, Society Benefit - Multipurpose and Other	19,222	9,783	9,374,434,620	59,873,680,375
X	Religion Related, Spiritual Development	222,145	31,310	11,188,295,327	25,258,716,962
Z	Unknown	6,054	2,266	391,876,079	765,008,636
Total		1,014,816	507,603	1,376,404,570,498	2,480,153,335,727

자료: IRS Business Master File 04/2010, NCCS 홈페이지 재인용

반면,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은 전형적으로 가족 구성원 또는 개인 간 소규모 집단에 의해 운영되며 투자소득 및 소규모 자금 등에서 지원을 받는다. 민간재단은 공중 다수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닌, 한명 혹은 몇 명의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는 자선단체를 의미한다. 보통 한명의 개인 기부자나 가족들, 혹은 회사 자산의 투자 수입을 통하여 재원을 지원받는다.⁷⁹⁾

2010년의 미국 민간재단 현황을 보면, 총자산 기준 1만달러 이하의

79) 오영호·손원익·황준성·전광현·양재모·윤강재,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1

재단이 58,53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20〉 미국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의 규모(2010년)

(단위: 개, 달러)

Total Asset Level	Number	Number Filing with IRS in Past 2 Years	Total Revenue	Total Assets
Under \$1 mil	58,538	55,591	3,298,926,031	15,363,736,867
\$1~10 mil	29,453	27,625	7,781,948,867	73,466,872,946
\$10~25 mil	3,174	3,132	5,215,044,056	48,813,229,630
More than \$25 mil	2,558	2,531	27,525,260,093	444,933,691,884
No 990-PF in past 2 years	27,087	0	0	0
Total	120,810	88,879	43,821,179,047	582,577,531,327

자료: IRS Business Master File 04/2010, NCCS 홈페이지 재인용

〈표 III-21〉은 비영리단체 중 면세자격이 주어지는 501(C)(3) 단체를 제외한 기타 다른 비영리단체의 종류와 규모, 수입금액, 총 자산 등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21〉 미국의 501(c)(3) 면세조직 이외 비영리조직의 규모(2010년)
(Other 501(c) Nonprofit Organizations)

(단위: 개, 달러)

IRS Subsection	Number	Number Filing With IRS	Total Revenue	Total Assets
01- Corporations originated under Act of Congress, including Federal Credit Unions	97	2	4,554,971	118,811,740
02- Title holding corporation for a tax-exempt organization.	5,657	3,825	1,241,718,881	13,327,115,489
04- Civic league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local associations of employees	112,164	59,888	81,209,715,867	84,594,991,413
05- Labor, agricultural, horticultural organizations. These are educational or instruct. grps...	56,370	36,574	21,283,096,345	31,818,114,740
06- Business leagues, chambers of commerce, real estate boards, etc. formed to improve conditions...	73,111	50,323	38,263,124,106	61,818,741,082
07- Social and recreational clubs which provide pleasure, recreation, and social activities.	57,628	32,460	12,759,490,931	25,925,696,395

〈표 III -21〉 미국의 501(c)(3) 면세조직 이외 비영리조직의 규모(2010년)
(Other 501(c) Nonprofit Organizations)(계속)

IRS Subsection	Number	Number Filing With IRS	Total Revenue	Total Assets
08- Fraternal beneficiary societies and associations, with lodges providing for payment of life...	57,717	31,204	14,802,577,601	102,266,941,652
09- Voluntary employees' beneficiary ass'ns (including fed. employees' voluntary beneficiary...	9,366	6,842	128,746,300,190	148,854,754,974
10- Domestic fraternal societies and assoc's-lodges devoting their net earnings to charitable...	20,138	10,595	549,247,171	2,966,748,397
11- Teachers retirement fund associations,	11	6	-31,357,326	247,322,584
12- Benevolent life insurance associations, mutual ditch or irrigation companies, mutual or coop...	5,893	4,232	53,408,261,759	114,805,089,089
13- Cemetery companies, providing burial and incidental activities for members,	10,166	5,095	777,281,678	9,021,474,015
14- State-chartered credit unions, mutual reserve funds, offering loans to members...	3,070	2,567	24,637,972,281	398,978,970,087
15- Mutual insurance cos. ar associations, providing insurance to members substantially at cost...	1,297	321	543,901,070	317,713,169

〈표 III-21〉 미국의 501(c)(3) 면세조직 이외 비영리조직의 규모(2010년)
(Other 501(c) Nonprofit Organizations)(계속)

IRS Subsection	Number	Number Filing With IRS	Total Revenue	Total Assets
16- Cooperative organizations to finance crop operations, in conjunction with activities ...	13	9	20,179,606	352,972,771
17- Supplemental unemployment benefit trusts, providing payments of suppl. unemployment comp...	271	124	626,273,555	256,901,439
18- Employee funded pension trusts, providing benefits under a pension plan funded by employees...	2	2	-81,794,278	1,161,433,878
19- Post or organization of war veterans.	35,057	19,096	1,266,448,406	2,862,077,624
20- Trusts for prepaid group legal services, as part of a qual. group legal service plan or plans.	8	5	1,457,542	1,045,210
21- Black lung trusts, satisfying claims for compensation under Black Lung Acts.	28	0	0	0
23- Veterans association formed prior to 1880	3	3	306,844,569	3,303,150,399
24- Trust described in Section 4049 of ERISA	1	0	0	0
25- Title Holding Company for Pensions, etc	1,032	761	2,243,479,449	26,477,309,650

〈표 III -21〉 미국의 501(c)(3) 면세조직 이외 비영리조직의 규모(2010년)
(Other 501(c) Nonprofit Organizations)(계속)

IRS Subsection	Number	Number Filing With IRS	Total Revenue	Total Assets
26- State-Sponsored High Risk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s	10	9	319,120,290	125,097,418
27- State-Sponsored Workers Compensation Reinsurance	9	3	765,426,527	5,297,559,798
40- Apostolic and religious orgs. - 501(d)	210	0	0	0
50- Cooperative Hospital Service Organization - 501(e)	16	10	469,159,742	488,236,331
60- Cooperative Service Org. of Operating Educ. Org.- 501(f)	1	1	0	0
71- Charitable Risk Pool	1	1	4,026,405	30,222,142
81- Qualified State-Sponsored Tuition Program	1	0	0	0
82- 527 Political Organizations	8	0	0	0
90- 4947(a)(2) Split Interest Trust	350	305	0	368,997,488
92- 4947(a)(1) Private Foundations	5,987	5,661	5,856,457	7,608,345,940
Total	455,693	269,924	384,142,363,795	1,043,390,814,914

자료: NCSS 홈페이지, <http://nccs.urban.org/>

(2) 비영리단체의 코드(NTEE CODE)

미국은 면세단체에 코드 번호를 부여하여 면세단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TEE란 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 로 면세단체 분류코드를 의미한다.

면세단체는 다음과 같이 I 부터 X까지 총 10개의 분류(major group)로 나뉘며, 알파벳에 따라 26개의 그룹(Decile Codes)으로 나뉜다. 이러한 분류시스템은 숫자(Centile Codes)에 따라 더 하위의 체계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A는 ARTS, CULTURE & HUMANITIES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A01(=Alliances & Advocacy), A02(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등으로 분류된다.⁸⁰⁾

알파벳에 따른 분류(Decile Codes)는 예를 들어 교육활동 내에서 고등교육과 같이 주요그룹(major group)을 특정한 활동(specific activity areas)에 따라 세부 조직으로 분류한다.

숫자에 따른 분류(Centile Codes)는 보다 하위 분류체계로 조직의 특별한 유형(specific types of organizations)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은 조직의 유형에 따라 junior colleges, undergradu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등으로 나뉜다.

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NTEE)는 IRS 코드에 따라 면세단체로 인정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명확한 분류 시스템을 제공한다. NCCS는 NTEE 시스템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프로그램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시스템(NPC, Nonprofit Program Classification System)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NTEE 시스템과 상당 부분 동일하지만, 특정 코드는 보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⁸¹⁾

80) NCCS, "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rev. May 2005)," 2005

81) 미국의 NTEE Code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람

〈표 III-22〉 NTEE Code

I.	Major Category: Arts, culture, & humanities
	A - Arts, Culture & Humanities
II.	Major Category: Education
	B - Education
III.	Major Category: Environment/animals
	C - Environment
	D - Animal-Related
IV.	Major Category: Health
	E - Health Care
	F - Mental Health & Crisis Intervention
	G - Voluntary Health Associations & Medical Disciplines
	H - Medical Research
V.	Major Category: Human services
	I - Crime & Legal-Related
	J - Employment
	K - Food, Agriculture & Nutrition
	L - Housing & Shelter
	M - Public Safety, Disaster Preparedness & Relief
	N - Recreation & Sports
	O - Youth Development
	P - Human Services
VI.	Major Category: International and foreign affairs
	Q - International,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VII.	Major Category: Public and societal benefit
	R - Civil Rights, Social Action & Advocacy
	S - Community Improvement & Capacity Building
	T - Philanthropy, Voluntarism & Grantmaking Foundations
	U - Science & Technology
	V - Social Science
	W - Public & Societal Benefit
VIII.	Major Category: Religion-related
	X - Religion-Related
IX.	Major Category: Mutual/membership benefit
	Y - Mutual & Membership Benefit
X.	Major Category: Unknown/unclassified
	Z - Unknown

자료: NCCS 홈페이지, <http://www.nccsdataweb.urban.org/PubApps/nteeSearch.php?gQry=allMajor&codeType=NTEE>

다) 기부 현황

NCCS에서 발표하는 자료 중에 <표 III-23>과 같이 기부금 수령 단체의 유형에 따른 분포를 나타내는 자료가 있다. 전체 유형 중에 종교분야가 3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13%의 교육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23> 수령단체의 유형에 의한 기부 분포(2011년)

(단위: %)

기부유형	기여도
종교	32.1
교육	13.0
휴먼 서비스	11.9
재단에 기부	8.7
의료	8.3
국제문제	7.6
공공 사회 혜택	7.2
문화·예술·인문	4.4
환경 및 동물	2.6
미지정	3.0
개인에 기부	1.3

자료: Amy S. Blackwood, Katie L. Roeger, and Sarah L. Pettijohn,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 URBAN INSTITUTE, 2012

나. Giving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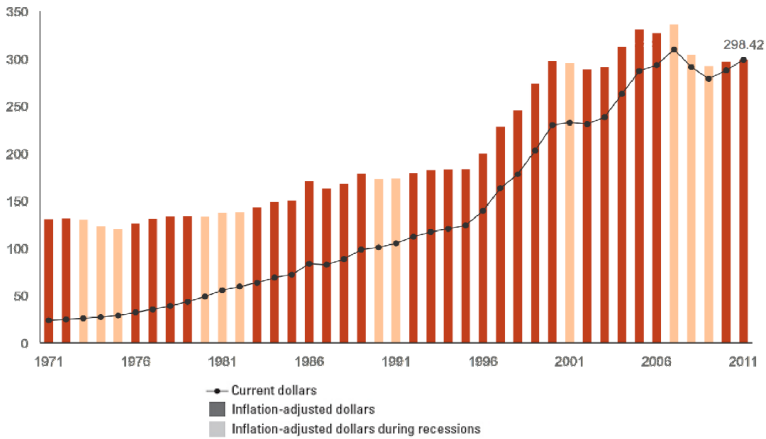
미국은 1973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88%가 기부했다고 할 만큼 기부문화가 성숙된 나라이다. [그림 III-11]을 통해 1971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미국의 기부금 총액은 증가하였으며, 증권시장의 전성기였던 1990년대 후반에 특히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2007~2008년 미국의 경제적 상황은 1973~1974년의 상황과 유사한

불황기로 2007~2008년 다우존스지수는 37% 하락하였고, 개인소득은 0.8% 하락하는 등 미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의 여파를 겪었다. 이는 기부 감소로 나타나 Giving USA가 기부금을 관측한 1950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감소를 나타냈다.⁸²⁾ 2011년 미국의 총기부액은 2,98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III-11] 미국의 기부금 규모(1971~2011년)

(단위: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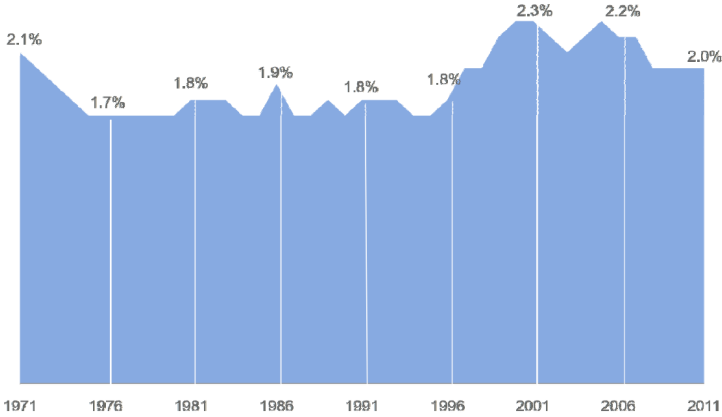


자료: Giving USA, "2012 Presentaion summary", 2012

2011년 미국의 기부총액은 GDP 대비 2.0%로 추정되며, 이 수준은 2010년의 2.2%와 비교할 때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1971년부터 2011년까지 GDP 대비 기부금 총액이 가장 많았던 기간은 2001년으로 2.3%를 나타내며, 가장 적었던 시기는 1976년으로 1.7%를 나타낸다.

82) 손원익·이순태·박세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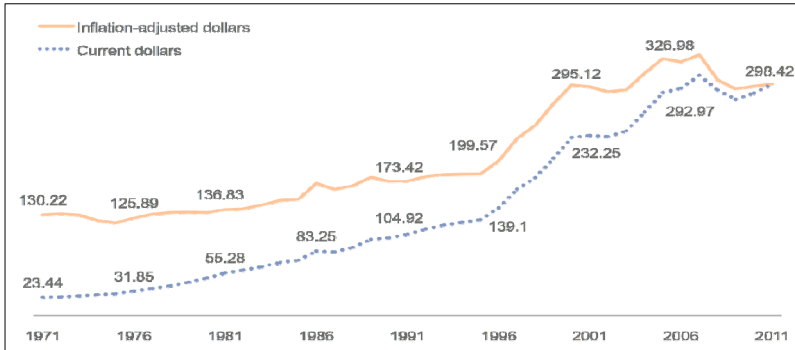
[그림 III-12] 1971~2011년 GDP 대비 기부금의 비중



자료: Giving USA, “2012 Presentaion summary”, 2012

[그림 III-13] 1971~2011년 미국의 전체 기부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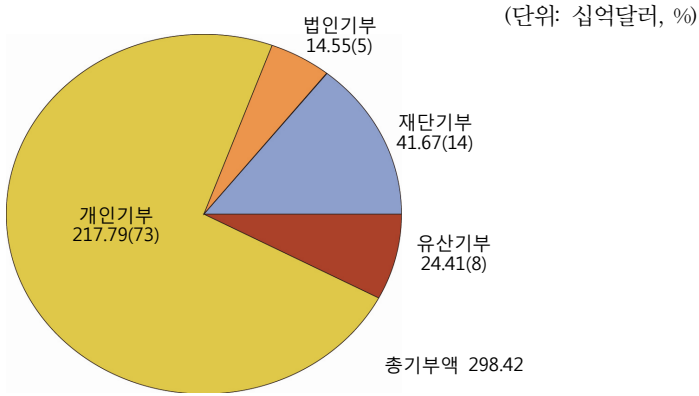
(단위: 십억달러)



자료: Giving USA, “2012 Presentation summary”, 2012

기부주체별로 기부금 총액을 분류하면 개인기부가 전체의 73%, 법인기부가 전체의 5%를 차지하여 개인기부의 비중이 법인기부의 비중보다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는 재단기부가 14%를 차지하고, 유산기부가 나머지 8%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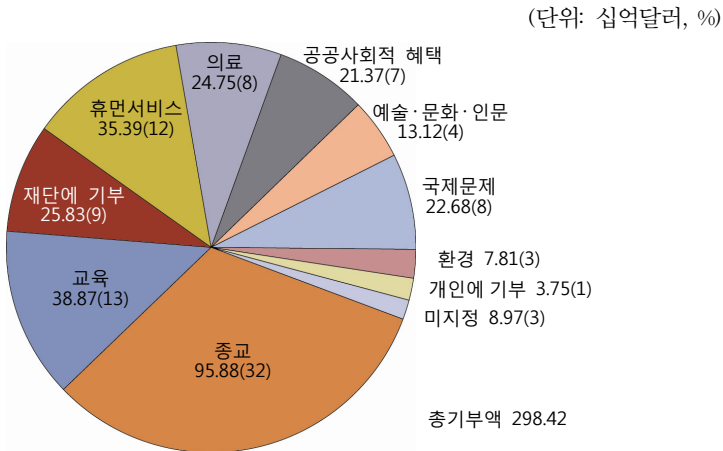
[그림 Ⅲ-14] 미국의 기부주체별 기부액 분포(2011년)



자료: Giving USA 2012 Presentaion summary

기분분야별 기부의 비중을 보면 종교분야가 전체의 32%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교육분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Ⅲ-16] 미국의 기부처별 기부액 분포(2011년)



자료: Giving USA 2012 Presentation summary

3. 국제 비교

〈표 III-24〉는 기부 관련 통계에 대하여 한·미·일 3국을 비교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기부주체 및 기부분야별 통계는 미비한 반면, 개인과 법인기부의 사업자·소득규모·자산규모 등의 기준에 따른 통계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통계는 기부의 현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부주체 및 기부분야별 통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미국 및 일본에 비하여 거시적 시각에서의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소득규모별·자산규모별 기부 규모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어 조금 더 미시적인 시각에서의 분석이 가능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탄력성 분석 등 실효성 있는 미시적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세통계연보』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거시적인 현황 분석이 가능하도록 미국과 같이 분야별 기부금과 기부주체 및 기부대상별 기부금의 규모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III-24〉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통계의 한·미·일 3개국 비교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및 미국에 비하여 제공하고 있는 통계가 매우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재무상황에 대한 통계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구체적인 통계를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통계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재무상황에 대한 통계를 『국세통계연보』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시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는 열람은 가능

하지만 통계형태로 축적되어 있지 않아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로서의 유용성은 작으며, 공시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여 통계로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허가한 각 부처에서도 매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각 단체로부터 받고 있지만 정보가 통계형태로 축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보의 신뢰성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며 각 부처에서도 비영리단체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⁸³⁾

8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기부금 조정명세서·기부금 명세서·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와 관련한 서식은 <부록 3>을 참고

〈표 III-24〉 기부 통계 국제 비교

	한국				일본			미국	
	국가자료	민간자료	국가자료	민간자료	국가자료	민간자료	국가자료	민간자료	
	국세통계연보	가계동향 조사	국세청 통계연보	NPO 백서 (국제칭)	국세청 통계연보	NPO 백서 (오사카 대학)	NCCS	Giving USA	
기부현황 (총 기부액)	○	○	-	-	○	-	○	○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대상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실문조사 대상 기부금)	-	-	-	-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분야별 기부 현황	-	-	-	-	-	-	-	-	
GDP 대비 기부금 비중	-	-	-	-	-	-	-	-	
기부액의 기부주체별 분류	-	-	-	-	-	-	-	-	
기부액의 기부처별 분류	-	-	-	-	-	-	-	-	
개인	○	-	-	-	○	-	-	○	
근로소득자 기부 현황	-	-	-	-	○	(원천소득세 기준)	-	-	
고소득 근로자 기부 현황	○	-	-	-	-	-	-	-	
종합소득자 기부 현황	○	-	-	-	-	-	-	-	
공익법인 법인세 과세현황	-	-	-	-	○	-	-	-	
기부액	○	-	-	-	-	-	-	○	
법인	○	-	-	-	○	-	-	-	
업체별	○	-	-	-	○	-	-	-	
수입금액별	○	-	-	-	-	-	-	-	
자본금액별	-	-	-	-	○	-	-	-	
자산규모별, 소득금액 규모별, 과세표준 규모별, 후자범인 10분위별	○	-	-	-	-	-	-	-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문화예술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 및 관련 통계의 축적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기부활동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부에 대한 통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며, 기부와 관련된 적절한 통계가 구축되었을 때 정부가 제공해야 할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에서의 기부를 받아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곳 역시 비영리 단체이므로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 및 통계 축적은 기부 관련 통계와의 상호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갖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통계 및 기부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II장에서 수행한 비영리단체의 통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국세 통계연보』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공시시스템 자료의 통계로서의 유용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공시시스템 자료의 경우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나 통계의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아 통계로서의 유용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비영리단체가 게시하는 손익계산서의 수입에 대한 세부항목이 임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요 세부항목에 대하여는 게시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입금액 중 회비와 순수 기부금의 구분이 필요하며, 순수기부금의 경우도 현금기부와 현물기부에 대한 정보 및 개인기부와 기업기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게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공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공시시스템의 정보와 각 비영리단체가 별도로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의 정보를 상호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비영리단체에 대한 설문결과로 도출된 정보와 공시시스템상의 정보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로부터 공시시스템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통계구축 현황을 주요국과 비교하기 위하여 가장 모범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와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통계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비영리단체의 재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축적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공시시스템에 게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각 부처가 비영리단체로부터 보고받는 정보 또한 통계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명성은 비영리단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부와 관련된 통계의 경우 우리나라가 비교국가보다 구체적으로 소득규모별·자산규모별 기부금 규모를 발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미시적인 분석이 가능하려면 현재보다 더 세분화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이 분야별 기부금 현황 및 기부주체별 기부금 규모 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여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기부금 현황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분야를 공식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는 명세서에 각 비영리단체의 분야별 코드를 기입하게 하면 기부금에 대한 거시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정책시사점은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현행체계를 유지하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내용의 확대 및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책임지는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비영리단체의 설립은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형식적으로 국세청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개선방향은 영국의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와 같은 조직에서 비영리단체의 설립, 공익성 검증, 사후관리를 일관성 있게 책임지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0
- 김혜련·임경민,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방법 연구』, 2012. 11
- 박주언·이희길, 『나눔통계 개선방안』, 201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 박태규·손원익·김진, 『모금기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재정학회, 2011
- 손원익,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2. 4
- _____,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국제 비교」,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1. 5
- _____,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 손원익·김상헌, 「공익단체의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 관한 경제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법무부 연구 용역보고서), 2011
- 손원익·김태훈, 『연구중심병원 세제혜택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 용역보고서), 2012
- 손원익·박태규, 『민간비영리조직(NPO)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손원익·송은주, 「비영리단체 정보공개 제도의 국제 비교」, 『한국비영리연구』 제8권 제3호, 2010
- 손원익·이순태·박세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0. 10
- 아름다운재단, 「기빙인덱스 조사요약」, 2012

오영호·손원익·황준성·전광현·양재모·윤강재,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1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각 연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_____, 『2011년 사회조사보고서』, 2011

오사카대학·대학원 국제 공공정책 연구과 NPO 연구정보센터, 『NPO 백서』, 2010

일본 국세청, 「국세청통계연보」, 각 연도

일본 총무성, 『공익법인에 관한 연차보고서』, 평성20년(2008년)

Amy S. Blackwood, Katie L. Roeger, and Sarah L. Pettijohn,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 URBAN INSTITUTE, 2012

CAF, “The World Giving Index,” 2010

Giving USA, “2012 Presentaion summary,” 2012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Giving Japan,” 2010

NCCS, “Guide to Using NCCS Data,” August 2006

_____, “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rev. May 2005),” 2005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npoinfo.nts.go.kr

구세군 대한본영 홈페이지, www.salvationarmy.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세청, www.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kr

나눔넷, www.nanumnet.or.kr

대한적십자사, www.redcross.or.kr
더하고 나누고 나눔포털, www.nanumkorea.go.kr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 www.chest.or.kr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아이들과미래 홈페이지, www.kidsfuture.or.kr
월드비전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www.unicef.or.kr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홈텍스, npoinfo.hometax.go.kr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www.irs.gov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www.nta.go.jp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www.mof.go.jp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www.soumu.go.jp

Institute of fundraising, www.tax-effectivegiving.org.uk
Johns Hopkins 대학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ccss.jhu.edu
NCSS 홈페이지, nccs.urban.org
OSIPP 홈페이지, www.osipp.osaka-u.ac.jp

〈부록 1〉 CAF The World Giving Index 2010⁸⁴⁾

영국의 CAF(Charities Aid Foundation)는 2010년 「The World Giving Index」를 발간하여 기부문화에 대한 국제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 보고서는 갤럽의 World View World Poll에서 2010년 15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15세 이상 도시거주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각 국가별 약 1,000명(중국과 러시아 등의 경우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해당국가의 전화 가능구역에 따라 전화조사 및 면대면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13개의 global regions로 분할하여 소개(기준: UN의 지역분류)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단체에 기부하였는가?(Donated money to an organisation?)
- ② 단체에 자원봉사를 하였는가?(Volunteered time to an organisation?)
- ③ 타인을 도왔는가?(Helped a stranger, or someone they didn't know who needed help?)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53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 그들의 사회에 기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사회에 대한 개인의 기부를 평가하기 위한 단일한 방법은 완벽하지 않다고 밝히며, 서

84) 본 부록은 보고서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기부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어 참고자료로 수록하였음

로 다른 이해 관계자는 데이터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고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지닌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결과는 <부표 1> 기부에 관한 국제 비교에 나타나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1위를 차지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뒤를 이어 아일랜드와 캐나다가 3위를 기록하였고, 이어 스위스와 미국이 공동 5위를 차지하였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스리랑카가 8위를 차지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⁸⁵⁾ 우리나라의 경우 153개국 중에서 81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받았다.

<부표 1> 기부에 관한 국제 비교

(단위: 순위, %)

	World Giving Index	% giving money	% volunteering time	% helping a stranger
Australia	1	70	38	64
New Zealand	1	68	41	63
Canada	3	64	35	68
Ireland	3	72	35	60
USA	5	60	39	65
Swiss	5	71	34	60
Holland	7	77	39	46
UK	8	37	15	41
Sri Lanka	8	58	52	50
Germany	18	49	28	56
Madagascar	153	6	11	18
Hong Kong	18	70	13	50
Mongolia	67	33	31	32
Taiwan	72	37	15	41
Republic of Korea	81	27	22	38
Japan	119	17	23	25
China	147	11	4	28

자료: CAF, "The World Giving Index," 2010

85) 오영호·손원익·황준성·전광현·양재모·윤강재,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1

〈부록 2〉 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 – Core Codes (NTEE-CC) Classification System (rev. May 2005)

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 - Core Codes (NTEE-CC) Classification System (rev. May 2005)

A Arts, Culture & Humanities

A01 Alliances & Advocacy
A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A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A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A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A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A19 Support NEC
A20 Arts & Culture
A23 Cultural & Ethnic Awareness
A24 Folk Arts
A25 Arts Education
A26 Arts & Humanities Councils & Agencies
A27 Community Celebrations
A30 Media & Communications
A31 Film & Video
A32 Television
A33 Printing & Publishing
A34 Radio
A40 Visual Arts
A50 Museums
A51 Art Museums
A52 Children's Museums
A54 History Museums
A56 Natural History & Natural Science
Museums
A57 Science & Technology Museums
A60 Performing Arts

A61 Performing Arts Centers
A62 Dance
A63 Ballet
A65 Theater
A68 Music
A69 Symphony Orchestras
A6A Opera
A6B Singing & Choral Groups
A6C Bands & Ensembles
A6E Performing Arts Schools
A70 Humanities
A80 Historical Organizations
A82 Historical Societies & Historic
Preservation
A84 Commemorative Events
A90 Arts Services
A99 Arts, Culture & Humanities NEC

B Education

B01 Alliances & Advocacy
B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B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B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B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B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B19 Support NEC
B20 Elementary & Secondary Schools
B21 Preschools
B24 Primary & Elementary Schools
B25 Secondary & High Schools
B28 Special Education
B29 Charter Schools
B30 Vocational & Technical Schools
B40 Higher Education

B41 Two-Year Colleges
 B42 Undergraduate Colleges
 B43 Universities
 B50 Graduate & Professional Schools
 B60 Adult Education
 B70 Libraries
 B80 Student Services
 B82 Scholarships & Student Financial Aid
 B83 Student Sororities & Fraternities
 B84 Alumni Associations
 B90 Educational Services
 B92 Remedial Reading & Encouragement
 B94 Parent & Teacher Groups
 B99 Education NEC

C Environment

C01 Alliances & Advocacy
 C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C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C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C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C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C19 Support NEC
 C20 Pollution Abatement & Control
 C27 Recycling
 C30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 Protection
 C32 Water Resources, Wetlands Conservation & Management
 C34 Land Resources Conservation
 C35 Energy Resources Conservation & Development
 C36 Forest Conservation
 C40 Botanical, Horticultural & Landscape Services
 C41 Botanical Gardens & Arboreta
 C42 Garden Clubs
 C50 Environmental Beautification
 C60 Environmental Education
 C99 Environment NEC

D Animal-Related

D01 Alliances & Advocacy
 D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D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D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D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D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D19 Support NEC
 D20 Animal Protection & Welfare
 D30 Wildlife Preservation & Protection

D31 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D32 Bird Sanctuaries
 D33 Fisheries Resources
 D34 Wildlife Sanctuaries
 D40 Veterinary Services
 D50 Zoos & Aquariums
 D60 Animal Services NEC
 D61 Animal Training
 D99 Animal-Related NEC

E Health Care

E01 Alliances & Advocacy
 E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E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E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E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E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E19 Support NEC
 E20 Hospitals
 E21 Community Health Systems
 E22 General Hospitals
 E24 Specialty Hospitals
 E30 Ambulatory & Primary Health Care
 E31 Group Health Practices
 E32 Community Clinics
 E40 Reproductive Health Care
 E42 Family Planning
 E50 Rehabilitative Care
 E60 Health Support
 E61 Blood Banks
 E62 Emergency Medical Services & Transport
 E65 Organ & Tissue Banks
 E70 Public Health
 E80 Health (General & Financing)
 E86 Patient & Family Support
 E90 Nursing
 E91 Nursing Facilities
 E92 Home Health Care
 E99 Health Care NEC

F Mental Health & Crisis Intervention

F01 Alliances & Advocacy
 F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F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F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F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F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F19 Support NEC
 F20 Substance Abuse Dependency, Prevention & Treatment
 F21 Substance Abuse Prevention

F22 Substance Abuse Treatment
 F30 Mental Health Treatment
 F31 Psychiatric Hospitals
 F32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F33 Residential Mental Health Treatment
 F40 Hot Lines & Crisis Intervention
 F42 Sexual Assault Services
 F50 Addictive Disorders NEC
 F52 Smoking Addiction
 F53 Eating Disorders & Addictions
 F54 Gambling Addiction
 F60 Counseling
 F70 Mental Health Disorders
 F80 Mental Health Associations
 F99 Mental Health & Crisis Intervention NEC

G Diseases, Disorders & Medical Disciplines

G01 Alliances & Advocacy
 G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G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G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G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G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G19 Support NEC
 G20 Birth Defects & Genetic Diseases
 G25 Down Syndrome
 G30 Cancer
 G32 Breast Cancer
 G40 Diseases of Specific Organs
 G41 Eye Diseases, Blindness & Vision Impairments
 G42 Ear & Throat Diseases
 G43 Heart & Circulatory System Diseases & Disorders
 G44 Kidney Diseases
 G45 Lung Diseases
 G48 Brain Disorders
 G50 Nerve, Muscle & Bone Diseases
 G51 Arthritis
 G54 Epilepsy
 G60 Allergy-Related Diseases
 G61 Asthma
 G70 Digestive Diseases & Disorders
 G80 Specifically Named Diseases
 G81 AIDS
 G83 Alzheimer's Disease
 G84 Autism
 G90 Medical Disciplines
 G92 Biomedicine & Bioengineering
 G94 Geriatrics
 G96 Neurology & Neuroscience

G98 Pediatrics
 G9B Surgical Specialties
 G99 Diseases, Disorders & Medical Disciplines NEC

H Medical Research

H01 Alliances & Advocacy
 H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H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H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H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H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H19 Support NEC
 H20 Birth Defects & Genetic Diseases Research
 H25 Down Syndrome Research
 H30 Cancer Research
 H32 Breast Cancer Research
 H40 Diseases of Specific Organ Research
 H41 Eye Diseases, Blindness & Vision Impairments Research
 H42 Ear & Throat Diseases Research
 H43 Heart & Circulatory System Diseases & Disorders Research
 H44 Kidney Diseases Research
 H45 Lung Diseases Research
 H48 Brain Disorders Research
 H50 Nerve, Muscle & Bone Diseases Research
 H51 Arthritis Research
 H54 Epilepsy Research
 H60 Allergy-Related Diseases Research
 H61 Asthma Research
 H70 Digestive Diseases & Disorders Research
 H80 Specifically Named Diseases Research
 H81 AIDS Research
 H83 Alzheimer's Disease Research
 H84 Autism Research
 H90 Medical Disciplines Research
 H92 Biomedicine & Bioengineering Research
 H94 Geriatrics Research
 H96 Neurology & Neuroscience Research
 H98 Pediatrics Research
 H9B Surgical Specialties Research
 H99 Medical Research NEC

I Crime & Legal-Related

I01 Alliances & Advocacy
 I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I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I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I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I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I19 Support NEC
 I20 Crime Prevention
 I21 Youth Violence Prevention
 I23 Drunk Driving-Related
 I30 Correctional Facilities
 I31 Half-Way Houses for Offenders &
 Ex-Offenders
 I40 Rehabilitation Services for Offenders
 I43 Inmate Support
 I44 Prison Alternatives
 I50 Administration of Justice
 I51 Dispute Resolution & Mediation
 I60 Law Enforcement
 I70 Protection Against Abuse
 I71 Spouse Abuse Prevention
 I72 Child Abuse Prevention
 I73 Sexual Abuse Prevention
 I80 Legal Services
 I83 Public Interest Law
 I99 Crime & Legal-Related NEC

J Employment

J01 Alliances & Advocacy
 J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J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J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J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J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J19 Support NEC
 J20 Employment Preparation & Procurement
 J21 Vocational Counseling
 J22 Job Training
 J30 Vocational Rehabilitation
 J32 Goodwill Industries
 J33 Sheltered Employment
 J40 Labor Unions
 J99 Employment NEC

K Food, Agriculture & Nutrition

K01 Alliances & Advocacy
 K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K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K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K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K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K19 Support NEC
 K20 Agricultural Programs
 K25 Farmland Preservation
 K26 Animal Husbandry
 K28 Farm Bureaus & Granges

K30 Food Programs
 K31 Food Banks & Pantries
 K34 Congregate Meals
 K35 Soup Kitchens
 K36 Meals on Wheels
 K40 Nutrition
 K50 Home Economics
 K99 Food, Agriculture & Nutrition NEC

L Housing & Shelter

L01 Alliances & Advocacy
 L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L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L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L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L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L19 Support NEC
 L20 Housing Development, Construction &
 Management
 L21 Low-Income & Subsidized Rental
 Housing
 L22 Senior Citizens' Housing & Retirement
 Communities
 L24 Independent Hous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25 Housing Rehabilitation
 L30 Housing Search Assistance
 L40 Temporary Housing
 L41 Homeless Shelters
 L50 Homeowners & Tenants Associations
 L80 Housing Support
 L81 Home Improvement & Repairs
 L82 Housing Expense Reduction Support
 L99 Housing & Shelter NEC

M Public Safety, Disaster Preparedness & Relief

M01 Alliances & Advocacy
 M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M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M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M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M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M19 Support NEC
 M20 Disaster Preparedness & Relief Services
 M23 Search & Rescue Squads
 M24 Fire Prevention
 M40 Safety Education
 M41 First Aid
 M42 Automotive Safety
 M60 Public Safety Benevolent Associations

M99 Public Safety, Disaster Preparedness & Relief NEC

N Recreation & Sports

N01 Alliances & Advocacy
 N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N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N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N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N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N19 Support NEC
 N20 Camps
 N30 Physical Fitness & Community Recreational Facilities
 N31 Community Recreational Centers
 N32 Parks & Playgrounds
 N40 Sports Associations & Training Facilities
 N50 Recreational Clubs
 N52 Fairs
 N60 Amateur Sports
 N61 Fishing & Hunting
 N62 Basketball
 N63 Baseball & Softball
 N64 Soccer
 N65 Football
 N66 Racquet Sports
 N67 Swimming & Other Water Recreation
 N68 Winter Sports
 N69 Equestrian
 N6A Golf
 N70 Amateur Sports Competitions
 N71 Olympics
 N72 Special Olympics
 N80 Professional Athletic Leagues
 N99 Recreation & Sports NEC

O Youth Development

O01 Alliances & Advocacy
 O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O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O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O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O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O19 Support NEC
 O20 Youth Centers & Clubs
 O21 Boys Clubs
 O22 Girls Clubs
 O23 Boys & Girls Clubs
 O30 Adult & Child Matching Programs
 O31 Big Brothers & Big Sisters
 O40 Scouting Organizations

O41 Boy Scouts of America
 O42 Girl Scouts of the U.S.A.
 O43 Camp Fire
 O50 Youth Development Programs
 O51 Youth Community Service Clubs
 O52 Youth Development - Agricultural
 O53 Youth Development - Business
 O54 Youth Development - Citizenship
 O55 Youth Development - Religious Leadership
 O99 Youth Development NEC

P Human Services

P01 Alliances & Advocacy
 P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P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P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P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P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P19 Support NEC
 P20 Human Services
 P21 American Red Cross
 P22 Urban League
 P24 Salvation Army
 P26 Volunteers of America
 P27 Young Men's or Women's Associations
 P28 Neighborhood Centers
 P29 Thrift Shops
 P30 Children & Youth Services
 P31 Adoption
 P32 Foster Care
 P33 Child Day Care
 P40 Family Services
 P42 Single Parent Agencies
 P43 Family Violence Shelters
 P44 In-Home Assistance
 P45 Family Services for Adolescent Parents
 P46 Family Counseling
 P47 Pregnancy Centers
 P50 Personal Social Services
 P51 Financial Counseling
 P52 Transportation Assistance
 P58 Gift Distribution
 P60 Emergency Assistance
 P61 Travelers' Aid
 P62 Victims' Services
 P70 Residential Care & Adult Day Programs
 P71 Adult Day Care
 P73 Group Homes
 P74 Hospices
 P75 Supportive Housing for Older Adults
 P80 Centers to Support the Independence of

Specific Populations

- P81 Senior Centers
- P82 Developmentally Disabled Centers
- P84 Ethnic & Immigrant Centers
- P85 Homeless Centers
- P86 Blind & Visually Impaired Centers
- P87 Deaf & Hearing Impaired Centers
- P88 LGBT Centers
- P99 Human Services NEC

Q International,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 Q01 Alliances & Advocacy
- Q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 Q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 Q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 Q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 Q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 Q19 Support NEC
- Q20 Promotion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 Q21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 Q22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 Q23 International Exchange NEC
- Q30 International Development
- Q31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 Q32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 Q33 International Relief
- Q35 Democracy & Civil Society Development
- Q40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 Q41 Arms Control & Peace
- Q42 United Nations Associations
- Q43 National Security
- Q50 International Affairs, Foreign Policy & Globalization
- Q51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Policy
- Q70 International Human Rights
- Q71 International Migration & Refugee Issues
- Q99 International,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NEC

R Civil Rights, Social Action & Advocacy

- R01 Alliances & Advocacy
- R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 R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 R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 R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 R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 R19 Support NEC
- R20 Civil Rights
- R22 Minority Rights
- R23 Disabled Persons' Rights

- R24 Women's Rights
- R25 Seniors' Rights
- R26 Lesbian and Gay Rights
- R28 Children's Rights
- R30 Intergroup & Race Relations
- R40 Voter Education & Registration
- R60 Civil Liberties
- R61 Reproductive Rights
- R62 Right to Life
- R63 Censorship, Freedom of Speech & Press
- R67 Right to Die & Euthanasia
- R99 Civil Rights, Social Action & Advocacy NEC

S Community Improvement & Capacity Building

- S01 Alliances & Advocacy
 - S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 S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 S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 S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 S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 S19 Support NEC
 - S20 Community & Neighborhood Development
 - S21 Community Coalitions
 - S22 Neighborhood & Block Associations
 - S30 Economic Development
 - S31 Urban &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 S32 Rural Economic Development
 - S40 Business & Industry
 - S41 Chambers of Commerce & Business Leagues
 - S43 Small Business Development
 - S46 Boards of Trade
 - S47 Real Estate Associations
 - S50 Nonprofit Management
 - S80 Community Service Clubs
 - S81 Women's Service Clubs
 - S82 Men's Service Clubs
 - S99 Community Improvement & Capacity Building NEC
- T Philanthropy, Voluntarism & Grantmaking Foundations**
- T01 Alliances & Advocacy
 - T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 T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 T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 T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T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T19 Support NEC
 T20 Private Grantmaking Foundations
 T21 Corporate Foundations
 T22 Private Independent Foundations
 T23 Private Operating Foundations
 T30 Public Foundations
 T31 Community Foundations
 T40 Voluntarism Promotion
 T50 Philanthropy, Charity & Voluntarism
 Promotion
 T70 Federated Giving Programs
 T90 Named Trusts NEC
 T99 Philanthropy, Voluntarism &
 Grantmaking Foundations NEC

U Science & Technology

U01 Alliances & Advocacy
 U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U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U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U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U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U19 Support NEC
 U20 General Science
 U21 Marine Science & Oceanography
 U30 Physical & Earth Sciences
 U31 Astronomy
 U33 Chemistry & Chemical Engineering
 U34 Mathematics
 U36 Geology
 U40 Engineering & Technology
 U41 Computer Science
 U42 Engineering
 U50 Biological & Life Sciences
 U99 Science & Technology NEC

V Social Science

V01 Alliances & Advocacy
 V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V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V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V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V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V19 Support NEC
 V20 Social Science
 V21 Anthropology & Sociology
 V22 Economics
 V23 Behavioral Science
 V24 Political Science
 V25 Population Studies

V26 Law & Jurisprudence
 V30 Interdisciplinary Research
 V31 Black Studies
 V32 Women's Studies
 V33 Ethnic Studies
 V34 Urban Studies
 V35 International Studies
 V36 Gerontology
 V37 Labor Studies
 V99 Social Science NEC

W Public & Societal Benefit

W01 Alliances & Advocacy
 W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W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W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W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W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W19 Support NEC
 W20 Government & Public Administration
 W22 Public Finance, Taxation & Monetary
 Policy
 W24 Citizen Participation
 W30 Military & Veterans' Organizations
 W40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W50 Telecommunications
 W60 Financial Institutions
 W61 Credit Unions
 W70 Leadership Development
 W80 Public Utilities
 W90 Consumer Protection
 W99 Public & Societal Benefit NEC

X Religion-Related

X01 Alliances & Advocacy
 X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X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X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X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X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X19 Support NEC
 X20 Christianity
 X21 Protestant
 X22 Roman Catholic
 X30 Judaism
 X40 Islam
 X50 Buddhism
 X70 Hinduism
 X80 Religious Media & Communications
 X81 Religious Film & Video
 X82 Religious Television

X83 Religious Printing & Publishing

X84 Religious Radio

X90 Interfaith Coalitions

X99 Religion-Related NEC

Y Mutual & Membership Benefit

Y01 Alliances & Advocacy

Y02 Management & Technical Assistance

Y03 Professional Societies & Associations

Y05 Research Institutes & Public Policy
Analysis

Y11 Single Organization Support

Y12 Fund Raising & Fund Distribution

Y19 Support NEC

Y20 Insurance Providers

Y22 Local Benevolent Life Insurance
Associations, Mutual Irrigation &
Telephone Companies & Like
Organizations

Y23 Mutual Insurance Companies &
Associations

Y24 Supplemental Unemployment
Compensation

Y25 State-Sponsored Worker's Compensation
Reinsurance Organizations

Y30 Pension & Retirement Funds

Y33 Teachers Retirement Fund Associations

Y34 Employee Funded Pension Trusts

Y35 Multi-Employer Pension Plans

Y40 Fraternal Societies

Y41 Fraternal Beneficiary Societies

Y42 Domestic Fraternal Societies

Y43 Voluntary Employees Beneficiary
Associations (Non-Government)

Y44 Voluntary Employees Beneficiary
Associations (Government)

Y50 Cemeteries

Y99 Mutual & Membership Benefit NEC

Z Unknown

Z99 Unknown

NEC = Not Elsewhere Classified

The 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
- Core Codes (NTEE-CC) is the
industry-wide standard for nonprofit
organizational classificatio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

The Center on Nonprofits and Philanthropy
The Urban Institute

Website: www.nccs.urban.org

Email: NCCS@ui.urban.org

Revised: MAY 2005

〈부록 3〉 서식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 조정명세서 · 기부금 명세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 <개정 2012.2.28>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input type="checkbox"/> 정부등 공공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종교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해당란에 √) <input type="checkbox"/> 자선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학술 <input type="checkbox"/>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⑫ 기부자								
법 인								
개 인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⑩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사업 연도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손금산입액 MIN(③, ④)
②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⑥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③)>0, ②5]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⑦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④ 한도액 { [(①-②)>0]×50% }		⑧ 한도초과액 [(③-④)>0]

2.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⑫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⑩-⑨)>0, ②5]
⑩ 한도액 (⑦×50%)		⑬ 소득금액 차감잔액 [(⑦-⑪-⑫)>0]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⑭ 한도초과액 [(⑨ - ⑩)>0]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⑮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⑱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⑯-⑮)>0, ②5]
⑯ 한도액 (⑬×10%)		
⑰ 손금산입액 MIN(⑮, ⑯)		⑲ 한도초과액 [(⑯-⑰)>0]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⑳ 기부금 합계액 (③+⑮)	㉑ 손금산입 합계 (⑤+⑰)	㉒ 한도초과액 합계 (⑳-㉑)=(⑧+⑱)

(뒤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㉓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㉔기공제액	㉕공제가능 잔액(㉓-㉔)	㉖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㉗차기이월액 (㉓-㉖)
합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 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 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 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부금					

작성 방법

- ① 소득금액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용차가감소득금액**(같은 서식 ㉓순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순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㉗기부금 합계액(③+⑥)을 합하여 적습니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전기이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적고, ㉔순금산입 합계(⑤+⑦)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③, ⑥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④ 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④-⑥)>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⑤ 순금산입액란: ④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 ⑥ 이월잔액 중 순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㉖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⑦ 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순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⑧ 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③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② 한도초과액 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㉗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 *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㉖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㉗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순금산입란에 적습니다.
- * 2.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8조에 따라 2011.7.1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정하여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기부금 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⑧금 액	비 고
①유 형	②코 드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등록번호 등		
⑨소 계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코드 10)							
	나.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코드 40)							
	다.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계						

작성 방법

1. ①유형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으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지정”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종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교란에 “합계”라고 적어야 합니다.
2. ②코드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1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은 “40”,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습니다.
3. ③과목란: 회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법인명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습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교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습니다.
8. ⑨소계란의 가.~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9. ⑩소계란의 다.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순금불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개정 2012.2.28>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 호)		④ 전 화 번 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input type="checkbox"/> 정부 등 공공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종교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자선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학술 <input type="checkbox"/>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⑫ 기부자	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개 인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⑪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2.2.2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1. 기본사항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⑧ 공익사업유형		⑨ 설립근거법	

(단위: 원)

2. 자산보유현황

구분	⑩ 총자산가액	⑪ 토지	⑫ 건물	⑬ 주식 등	⑭ 금융자산	⑮ 기타 자산
⑯ 총계 (a=b+c)						
⑯ 고유목적사업						
⑯ 수익사업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

(단위: 원)

구분	⑯ 합계	수익사업						⑮ 고유목적사업	
		금 용				부 동 산			⑳ 기타수익사업
		㉑ 소계	㉒ 이자	㉓ 배당	㉔ 기타	㉕ 소계	㉖ 임대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4. 고유목적사업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제출서류	1.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4.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처분 명세서 5.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기본사항

- 가. ⑥란의 공익사업유형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나. ⑥설립근거법은 해당 법률을 모두 적습니다.
예) 학교법인 xxx학원의 경우 :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

2. 자산보유현황

- 가. ⑩란의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
- 나. ⑪란부터 ⑭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수입금액 내역

- 가. ⑯란의 합계란은 고유목적사업란의 수입금액과 수익사업란의 수입금액을 합한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나. ⑳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다. ㉑기타수익사업란은 부동산 임대·매각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을 적습니다.
- 라. ㉒고유목적사업란은 금융·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등록금), 기부금 등

4. 고유목적사업 현황

- 가. 해당 공익법인의 주요업무를 적습니다.
- 나. 고유목적사업의 주요실적과 향후계획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개정 2012.2.2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쪽)

1.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7월			
1월				8월			
2월				9월			
3월				10월			
4월				11월			
5월				12월			
6월				차기이월	-	-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단위 : 원)

⑤ 지출월	⑥ 지급목적	⑦ 지급건수	⑧ 대표 지급처명	⑨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⑩ 금액

작성 방법

1. 기부금의 수입·지출명세

- ①란에는 12월말 법인을 예로 들었으나 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기타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예시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금액
1월	재단 인건비	15	김공익 외	701111-1234567	25,000
1월	∴	∴	∴	∴	∴
2월	장학금 지급	20	김우수 외	830101-1234567	28,000
2월	∴	∴	∴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지급처명과 대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는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출처 중 가장 큰 대표지출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개정 2012.2.28>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단위 : 주식수, 원)

주식명	보유 주식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	비고
			출연	유상 취득	기타		
합 계							

2. 보유주식 변동사항

(단위 : 주식수, 원)

일자	변동 사유	주식명	주식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관 계
					(주식발행법인, 출연자와의 관계)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단위 : 주식수, %)

주식명	주식수	보유비율			비고
		총발행주식	보유주식수	보유 비율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株式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주식수, %, 원)

자산총액	株式총액	비율	비고

작성 방법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 가.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주식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주식가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 100백만원,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 출연 :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만을 적음
 - * 유상 취득 :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을 적음
 - * 무상증자 등으로 단순히 주식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 다. 기중에 매각한 주식으로부터 매각전에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현황란에 적고 '비고'란에 '기중매각'으로 적습니다.

2. 보유주식 변동상황

- 가. 기중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적습니다.
- 나. 무상증자(감자) 등 해당 공익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다.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다음 구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1. 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 라.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3. 주식 등의 보유비용

- 가.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 가.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개정 2012.2.28>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1. 출연자(기부자)

(단위 : 원)

(1) 설립시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2)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성명	상임여부	출연자와의 관계	비고

작성 방법

1. 출연자(기부자)

-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설립시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 법인의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 출연재산 종류에는 1. 현금 2. 금융자산 3. 토지 4. 건물(구축물 포함) 5. 주식 등 6.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 이사 등 주요 구성원은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임원, 그 밖에 해당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문요약>

비영리분야 통계의 실태와 통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손원의

복지·교육·문화예술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 및 관련 통계의 축적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민간에서의 기부를 받아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곳도 비영리단체이므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축적은 기부 관련 통계와의 상호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갖고 있다.

최근 비영리법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관련 통계는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통계 및 기부 통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관련 통계 및 기부 관련 통계를 실태위주로 분석하고,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부와 관련된 통계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분야를 공식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각 비영리단체의 분야별 코드를 기입하게 하면 기부

금에 대한 현황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영리 통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책임지는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국의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와 같은 조직에서 비영리단체의 설립, 공익성 검증, 사후관리를 일관성 있게 책임지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Current Status of NPO Statistics and Policy Proposal for Improvement

Wonik Son

The government expenditures for social services in the field of welfare, education, culture and arts, etc. have been expanded as people demand more for the social services. The government expenditures are distributed to people through NPOs (non-profit organizations) in most countries including Korea. An accumulation of relevant statistics for NPOs is more important than before in order to achieve an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s.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accumulate statistics for donations for the purpose of cross examinations since donations are another critical financial source of NPO's social services.

The current status of statistics for NPO in Korea is still poor even though the importance of relevant statistics has been greater.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current status of NPO statistics and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NPO statistics in Korea, and recommended policy proposal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This study showed that Korea has less detailed statistics for NPOs and donations than other countries. It is recommended

that fields of NPOs need to be officially classified, and classified codes also need to be assigned to each donation to create and accumulate relevant statistic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more fundamental reform w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ocial services delivered by NPOs. The direction for the fundamental reform is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which takes all responsibility from NPO's registration to NPO's audit.

〈著者略歷〉

손원익

미국 William Penn College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영리분야 통계의 실태와 통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2013년 6월 20일 인쇄

2013년 6월 27일 발행

저 자 손원익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주)정인 I&D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3

ISBN 978-89-8191-633-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

